

유엔군사령부
부대번호 15259
군우 96271-5259



유엔군사령부
규정 551-4

2019년 5월 13일

군사작전

한국 정전 협정 준수

*본 규정은 2018년 7월 27일 자 유엔군사령부 규정 551-4를 대체한다.

사령관을 대리하여:

MARK W. GILLETTE
미합중국 육군 소장
참모장

공식적으로:



ROCKSON M. ROSARIO
정책, 프로그램, 상장 관리처장

요약. 본 개정본은 기존의 2015년 6월 4일자 유엔군사령부(유엔사) 규정 551-4 ‘한국 정전협정 준수’를 대체한다. 본 규정은 1950년 7월 7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84호, 1953년 7월 27일 유엔사, 북한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간 체결된 한국 정전협정, 및 모든 정전협정 후속합의서에 명시된 유엔군사령부 사령관(유엔군 사령관)의 전반적인 책임을 기술하고 실행한다.

변경사항 요약. 본 문건은 기존 규정을 대폭 개정한 것으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정전 업무에 있어 한국군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유엔사와 유엔사군정위의 새로운 접근법을 반영한 ‘제7장: 정전협정 위반 보고 및 조사’ 부분이 완전히 새로 작성되었다. 정전협정 준수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접근은 정전협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유엔사와 한국군이 공동의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제8장: 비무장지대 점검’에는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의 정전협정 교육 및 점검 전 조언·지원을 위한 사전 방문 (조언·지원 방문) 관련 내용이 추가되었다. 또한 ‘2016년 중감위의 정전 의무 및 기여 확대 재확인 각서’가 이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제1-4.e항 중감위의 임무와 책임’을 개정하였으며, ‘제3장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한강하구’에는 비무장지대 내 영농활동, 확성기 사용, 출입·공사 신청

절차, 소방 자산 투입 절차 및 한강하구 민정경찰 임무 관련 설명 등이 새로 추가되었다. 이 외에도 제1장, 2장, 3장, 4장, 10장에 걸쳐 상당수의 행정사항과 방침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본 문건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제5장, 6장, 11장, 12장은 일부 행정사항만 소폭 수정되었다. 중감위 대표단으로서 폴란드에 대한 유엔사의 지원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삭제되었다.

적용. 본 규정은 대한민국의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병력과 대한민국에 배치될 수 있는 모든 훈련 병력 또는 기타 외국군 병력에 적용된다. 또한 본 규정은 비무장지대/한강하구/서북도서에 진입하거나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인원이라면 그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본 규정은 유엔군 사령관이 인정하는 한국 정전협정 기간 동안 적용된다.

보충.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유엔사군정위) 비서처, 군우 96271-5259 부대번호 15294의 사전 승인 없이 예하 사령부에서 본 규정에 대한 보충물을 추가 발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양식. 주한미군 양식은 www.usfk.mil에 있다.

기록 관리. 본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생성된 기록물은 미 육군 규정 25-400-2에 의거하여 식별, 유지 및 폐기되어야 한다. 기록물 제목 및 설명은 미육군 기록 정보 관리 시스템(ARIMS) <https://www.arims.army.mil>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선 방안 제안. 본 규정은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에서 작성하였다. 의견이나 개선안은 미 육군성 양식 2028(간행물 및 공백 양식 수정 건의)에 기재하여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부대번호 15294, 군우 96271-5259로 제출하도록 한다.

배급. 전자 매체 한정 (EMO).

목차

제 1 장

개요, 1쪽

1-1. 목적

1-2. 참고 문헌

1-3. 약어 및 용어 설명

1-4. 정전협정 책임사항

1-5. 방침

제 2 장

유엔군 사령관의 정전 책임에 대한 지원, 8쪽

2-1. 서언

2-2. 개요

2-3. 지상군

2-4. 공군

2-5. 해군

제 3 장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한강하구, 12쪽

3-1. 개요

3-2. 책임 및 권한

3-3. 표식물/표지판 종류

3-4. 표식물/표지판 점검 및 관리

3-5. 비무장지대 내 공사

3-6. 비무장지대/한강하구 출입

3-7. 비무장지대 내 영농

3-8. 비무장지대 내 산불 및 특수 소방 자산 운용 승인 신청 절차

3-9. 유엔사 비무장지대 민정경찰

3-10. 비무장지대 반입 인가 화기

3-11. 비무장지대 내 확성기 방송

3-12. 친교

3-13. 훈련

3-14.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내에서의 사진 촬영

3-15. 한강하구 내 민간 선박 항행 및 민정경찰에 관한 제반 규칙

3-16. 비무장지대 상공 통제

3-17. 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경고

제 4 장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 34쪽

4-1. 개요

4-2. 배경

4-3. 책임

목차(계속)

제 5 장

남북관리구역, 42쪽

- 5-1. 개요
- 5-2. 배경
- 5-3. 남북관리구역 통제반
- 5-4. 남북관리구역 한국군 운영단
- 5-5. 남북관리구역 군사분계선 통행 신청서
- 5-6. 남북관리구역 출입 및 이동
- 5-7. 신분증 및 출입증
- 5-8. 기타 고려사항

제 6 장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및 중감위에 대한 원조 및 지원, 45쪽

- 6-1. 개요
- 6-2. 책임
- 6-3. 이동과 경비
- 6-4. 중감위 인원의 경호 및 경비
- 6-5. 행정 및 군수 지원
- 6-6. 원조 및 협조

제 7 장

정전협정 위반 보고 및 조사, 47쪽

- 7-1. 권한
- 7-2. 개요
- 7-3. 보고
- 7-4.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사건 분석
- 7-5. 협력적 접근
- 7-6. 유엔사군정위 소집
- 7-7. 유엔사군정위 회의
- 7-8. 한국군 자체 조사
- 7-9.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및 유엔사 법무실의 적절한 지원하 한국군 자체 조사
- 7-10. 특별조사반
- 7-11. 조사 보고
- 7-12. 북한군 위반사항

제 8 장

정전 유지 활동, 54쪽

- 8-1. 권한
- 8-2. 목적
- 8-3. 참고용어
- 8-4. 책임
- 8-5.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점검반 인원
- 8-6. 점검 항목
- 8-7. 보고

목차(계속)

제 9 장

비무장지대 안보견학장, 58쪽

제 10 장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및 군정위 본부구역에서 필요한 식별 표지, 58쪽

- 10-1. 신분증 및 출입증
- 10-2. 완장
- 10-3. 기타 식별 양식
- 10-4. 차량
- 10-5. 항공기 표식물
- 10-6. 한강하구 선박 식별 표지
- 10-7. 북한군/중국인민지원군 식별 표지

제 11 장

영현 등록 업무, 65쪽

- 11-1. 개요
- 11-2. 책임
- 11-3. 군인 유해 발굴 및 교환

제 12 장

인원 교체, 66쪽

- 12-1. 개요
- 12-2. 책임
- 12-3. 출입항
- 12-4. 절차

별지, 68쪽

- A. 참고 문헌
- B. 대외 배부처 목록

서식 목차

- 2-1. 대성동, 11쪽
- 3-1. 군사분계선 표식물 형태, 15쪽
- 3-2.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구역, 16쪽
- 3-3.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표지판, 17쪽
- 3-4. 비무장지대 항공기 월경 방지 경고 표지판 표준 규격, 18쪽
- 3-5. 한강하구 남방한계선 표식물, 20쪽
- 3-6. 한강하구 남방한계선 표식물 1~12 번 위치, 21쪽
- 3-7. 언론사 비무장지대 출입신청서 견본, 27쪽
- 4-1.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 (군정위 본부구역), 35쪽
- 4-2. 군정위 본부구역-판문점, 36쪽
- 5-1. 남북관리구역 군사분계선 통행 신청 절차, 44쪽
- 10-1. 군정위 본부구역을 제외한 비무장지대/한강하구에서 필요한 식별 표지, 61쪽
- 10-2. 군정위 본부구역에서 필요한 식별 표지, 62쪽

목차(계속)

10-3. 비무장지대, 군정위 본부구역에서 북한군/중국인민지원군 측 인원에게 필요한 식별 표지,
63쪽

용어집, 71쪽

제1장 개요

1-1. 목적

유엔사 규정 551-4의 기본적인 내용은 정전협정 준수라는 유일한 목적의 달성을 지원함에 있어 모든 관계자들에게 필요한 지침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규정은 1950년 7월 7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84호와 1953년 7월 27일 유엔군 사령부(유엔사), 북한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간 체결된 한국 정전협정,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체결된 모든 후속합의서에 명시된 유엔군사령부 사령관(유엔군 사령관)의 전반적인 책임을 기술하고 실행한다. 본 규정은 정전협정 제17항과 정전교전규칙에 따라 정전협정의 준수와 적대행위의 지속적인 중단을 보장하기 위해 수립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1-2. 참고 문헌

필수 및 관련 문건은 별지 A에 열거되어 있다.

1-3. 약어 및 용어 설명

본 규정에 사용된 약어 및 용어는 용어집에 설명되어 있다.

1-4. 정전협정 책임사항

a. 유엔군 사령관은 유엔사 측의 정전협정 관할권자로서 정전협정 제반 조항의 준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 대한민국(한국)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은 2011년 10월 24일 유엔군 사령관과 함께 정전 관리 책임에 대한 기록각서에 서명함으로써 한국군이 정전협정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준수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b. 정전협정에 의거하여 정전협정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3개의 위원회가 수립되었다. 그 중 2개의 위원회는 현재까지 정전협정에서 지시한 책임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세 번째 위원회인 중립국송환위원회는 그 임무를 완수해 해체되었다.

(1)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유엔사군정위)는 유엔사 측의 군정위로서, 수석대표를 장(長)으로 하며, 미국대표, 한국대표, 영국대표, 유엔사 회원국 소속 순환대표 및 유엔사군정위 비서처로 구성된다. 유엔사군정위 비서처는 비서장이 지휘하며, 협상, 점검, 조사, 참관, 비무장지대 출입 및 군사분계선 통과 승인, 정전 교육 및 안보견학 등 유엔군 사령관으로부터 부여 받은 일상적인 정전협정 관련 활동 및 지속적인 정전협정 유지 활동을 실시한다.

(2) 중립국감독위원회(중감위)는 6·25 전쟁 당시 중립적인 위치에 있던 4개국을 대표하는 4명의 선임장교로 구성된 중립기구로서, 유엔군 사령관은 스웨덴과 스위스 2개국을, 북한군/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은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2개국을 각각 지명하였다. 스웨덴과 스위스 대표단은 유엔사 측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군정위 본부구역)에 위치한 중감위 캠프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폴란드는 1995년 북한에서 추방되었지만 한국에 정기적으로 대표단을 파견하여 중감위의 역할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 체코공화국은 체코슬로바키아가 수행했던 중감위의 역할을 계승할 의사를 밝혔으나, 북한군/중국인민지원군 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체코 대표단은 1993년 중감위에서 제명되었다. 중감위 3개국 대표들은 2016년 정전 준수를 감독, 감시, 시찰, 조사하는 중감위의 정전 의무를 지속 수행하고 기여를 확대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중감위는 정전협정 상 집행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전협정 제17항에 명시된 정전협정의 정신과 제18항 및 28항에 규정된 유관기관의 초청과 지원에 의거하여 이러한 임무를 수행한다(중감위의 정전 의무 및 기여 확대

재확인, 2016).

- c. 정전협정과 정전협정 후속합의서에 명시된 유엔군 사령관의 책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육해공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을 포함한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무력집단이 한국에 있어서의 일체 적대행위를 완전히 중단할 것을 명령하고 또 이를 보장한다(정전협정 제12항).
 - (2) 인가된 예외사항의 적용 대상이 아닌 일체 무력집단, 보급 및 장비를 비무장지대로부터 철수시킨다(정전협정 제13항 ㄱ목).
 - 참고:** 북측 비무장지대에 대규모 북한군 병력이 주둔함에 따라 유엔사는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감시, 경비를 위한 병력을 비무장지대 내에 유지한다.
 - (3)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일체 지상 군사역량이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 지역을 존중하도록 한다(정전협정 제14항).
 - (4)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일체 해상 군사역량이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 육지에 인접한 해면을 존중하며 항구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하도록 한다(정전협정 제15항).
 - (5)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일체 공중 군사역량이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 통제 하에 있는 한국 지역 및 이양 지역에 인접한 해면의 상공을 존중하도록 한다(정전협정 제16항).
 - (6)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및 우도의 5 개 서북도서군에 대한 군사통제를 유지한다(정전협정 제13항 ㄴ목).
 - (7) 정전협정의 조항과 규정을 준수하며 집행할 책임이 있다(정전협정 제17항).
 - (8)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모든 군대 내에서 일체의 필요한 조치와 방법을 취함으로써 정전협정 전체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보장한다(정전협정 제17항).
 - (9) 군정위 및 중감위와 적극 협력함으로써 정전협정 전체 규정의 문구와 정신을 준수하도록 한다(정전협정 제17항).
 - (10) 한국 경외로부터(6·25 전쟁 말 주둔했던 인원 수를 초과하여) 군사인원을 들여오는 것을 중지한다. 단, 부대 순환 및 임시 임무를 받아 배치되는 인원의 도착은 허가한다(정전협정 제13항 ㄷ목).
 - (11) 한국 경외로부터(정전협정 체결 당시 주둔했던 규모를 초과하여) 전투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한다(정전협정 제13항 ㄹ목).
 - (12) 군인의 한강하구 출입을 인가한다(정전협정 후속합의서 “A” 제4항).
 - (13)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 이남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에 대한 책임을 진다(정전협정 제10항).

(14)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것을 허가 받는 군인 혹은 시민의 인원 수를 결정한다(정전협정 제10항).

(15) 군정위 위원을 임명한다(정전협정 제20항).

(16) 필요한 공동감시소조원을 임명한다(정전협정 제23항 ㄴ목).

참고: 공동감시소조는 군정위의 조사 기구로서 양측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들을 조사한다. 북한군의 공동감시소조 불참으로 인해, 유엔사는 특별조사반을 운용하여 독자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별조사반은 유엔사군정위, 유엔사 회원국 연락장교 및 한국군 군정위 연락단(군정위 연락단) 소속 인원들로 구성되며, 보통 중감위의 스웨덴/스위스 장교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참관단이 동행한다. 특별조사반이라는 용어는 본 규정 전반에 걸쳐 사용된다.

(17) 군정위 본부구역 인근 비무장지대 내에 적절한 비행장을 건설, 운영 및 유지한다(정전협정 제 13항 ㅈ목).

참고: 유엔사는 군정위 본부구역에 헬기 착륙장(H-128)을 운영하며, 비행 권한 확인을 위한 비행 임무를 매월 실시한다.

(18) 비무장지대와 인근 지역 간의 경계선을 따라 적당한 표식물을 세운다(정전협정 제4항).

(19) 통제하의 지역이 한강하구 수역과 인접하는 데 있는 하구 및 항구에 적당한 표식물을 설치한다(정전협정 후속합의서 “A” 제3항).

(20) 군사인원의 한국에의 도착 및 한국으로부터의 이거에 관하여 유엔사군정위 비서장 및 중감위에 보고한다(정전협정 제13항 ㄷ목).

(21) 북한군 측의 사망한 인원의 매장 지점에 관한 모든 가용한 정보를 북한군에 제공한다(정전협정 제13항 ㅂ목, 정전협정 후속합의서 “C”).

(22) 군정위와 중감위가 그들의 직책과 임무를 집행할 때에 충분한 보호 및 일체의 가능한 방조와 협조를 한다. 중감위가 쌍방이 합의한 주요 교통선을 경유하여 중감위 본부와 출입항 간을 왕래할 때와 또 중감위 본부와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지점 간을 왕래할 때에 충분한 통행상의 편의를 제공한다(정전협정 제13항 ㅅ목).

(23) 군정위 및 중감위에 요구되는 통신 및 운수를 포함한 보급상의 원조를 제공한다 (정전협정 제13항 ㅇ목).

(24) 중감위 전체 위원 및 기타 인원이 모두 자기의 직책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자유와 편리를 가지도록 보장한다. 이는 인가된 외교인원이 국제 관례에 따라 통상적으로 향유하는 바와 동등한 특권, 대우 및 면제권을 포함한다(정전협정 제13항 ㅊ목).

(25) 군정위와 중감위 및 그 각자에 속하는 소조의 사업 비용을 부담한다(정전협정 제18항).

(26) 중감위 임무 집행에 필요한 운전수, 서기, 통역, 통신원과 같은 부속인원 및 필요한 비품을 공급한다(정전협정 제40항 ㄴ목).

(27) 정전협정 중의 어떠한 규정이든지 위반하는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인원을 적당히 쳐벌할 것을 보장한다(정전협정 제13항 □목).

d. 정전협정에 명시된 유엔사군정위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정전협정 이행 여부를 감독하며 정전협정의 위반사건이 있을 시 협의하여 처리한다(정전협정 제24항). 필요시 유엔사와 북한군 간 장성급 회의를 소집한다(정전협정 후속합의서 “U”).

(2) 군정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 규정을 채택한다(정전협정 제25항 ㄷ목).

(3) 정전협정 전체 규정의 문구와 정신을 준수하도록 유엔군 사령관과 중감위와 적극 협력한다(정전협정 제17항).

(4)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이행을 감독한다(정전협정 제25항 ㄹ목).

(5) 정전협정에 의거해 수립된 공동감시소조에 북한군이 더이상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유엔사군정위는 비무장지대나 한강하구에서 정전협정이 위반되었다고 의심될 시 특별조사반을 파견하여 위반사건을 조사한다(정전협정 제27항).

(6) 특별조사반의 사업을 지도한다(정전협정 제25항 □목).

(7) 정전협정의 위반사건을 협의하여 처리한다(정전협정 제25항 ㅂ목).

(8) 모든 위험물을 비무장지대로부터 제거하는 것을 지시하고 감독한다(정전협정 제13항 ㄱ목).

(9) 특정한 인원이 비무장지대에 들어감을 허가한다(정전협정 제9항).

(10) 군사분계선 통과를 허가한다(정전협정 제7항).

(11) 비서처 전방사무소/공동일직실을 판문점에 설치한다(정전협정 제25항 ㄱ목, 정전협정 후속합의서 “M”).

(12) 북한군 군정위 혹은 그에 상응하는 조직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준비태세를 유지한다(정전협정 제31항).

(13) 공작 인원과 특별조사반의 증명 문건 및 휘장 또 임무 집행 시에 사용하는 일체의 차량, 비행기 및 선박의 식별 표식을 발급한다(정전협정 제25항 ㅊ목).

(14) 중감위에 요청하여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비무장지대 이외의 지점에 가서 특별한 감시와 시찰을 행한다(정전협정 제28항).

(15)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확정될 때에는 즉시 유엔군 사령관에게 보고한다. 적절한 경우 북한군 사령관에게 보고서를 제공한다(정전협정 제29항).

(16)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 만족스럽게 시정되었다고 확정된 때에는 유엔군 사령관에게 보고한다. 적절한 경우, 북한군 사령관에게 보고서를 제공한다(정전협정 제30항).

- (17) 적절한 경우, 중감위로부터 받은 정전협정 위반사건에 관한 조사 보고서 및 기타 보고서와 회의록을 북한군 사령관에게 전달한다(정전협정 제25항 ㅅ목).
- (18) 쌍방 사령관 간에 통신을 전달하는 중개 역할을 담당한다(정전협정 제25항 ㅈ목).
- (19)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 비무장지대 민사행정 경찰의 인원 수 및 그가 휴대하는 무기를 규정한다(정전협정 제10항).
- (20) 비무장지대 민사행정 경찰 이외의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특정한 인원을 허가한다(정전협정 제10항).
- (21)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양 경계선에 따라 설치한 표식물의 설치를 감독하고, 필요시 이를 수리 및 관리한다(정전협정 제4항, 정전협정 후속합의서 “H3” 및 “H4”).
- (22) 한강하구의 항행 규칙을 규정한다(정전협정 제5항).
- (23) 모든 군 병력이 비무장지대로부터 철수한 후에는 비무장지대 내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폭파물, 지뢰원, 철조망 및 기타 유엔사군정위 및 특별조사반 인원의 통행 안전에 위협이 미치는 위험물에 대한 보고서를 유엔군 사령관으로부터 받는다(정전협정 제13항 ㄱ목).
- (24) 군정위 본부구역 부근 비무장지대 내의 비행장의 용도를 결정한다(정전협정 제13항 ㅈ목)
- (25) 기록, 서기, 통역 및 군정위가 필요로 하는 기타의 직책을 집행한다(정전협정 제22항).
- (26) 정전협정에 규정한 보고 및 회의 기록의 문건철 두 별을 보관한다. 동 위원회의 최후 해산 시에는 상기 문건철을 쌍방에 각 한 별씩 나누어준다(정전협정 제34항).
- (27)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정전협정의 수정 혹은 증보에 대한 건의를 제출한다 (정전협정 제35항).
- (28) 상대방에 속하는 군사인원의 시체의 인도인수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정전협정 제13항 ㅂ목, 정전협정 후속합의서 “C”).
- e. 정전협정에 명시된 중감위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 (1) 군사인원의 한국에의 도착 및 한국으로부터의 이거에 관하여 유엔군 사령관의 보고를 받는다(정전협정 제13항 ㄷ목).
- (2) 한국으로 들어오고 한국으로부터 이거하는 부대 및 인원의 윤환을 감독하며 시찰한다(정전협정 제13항 ㄷ목).
- (3) 교체를 위해 도착한 전투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감독하며 점검한다(정전협정 제13항 ㄹ목).
- (4) 유엔군 사령관 및 유엔사군정위와 적극 협력함으로써 정전협정 전체 규정의 문구와 정신을 준수한다(정전협정 제17항).
- (5) 비무장지대 이외의 지점에서 발생한 정전협정 위반행위를 보고받았을 경우, 유엔사군정위 수석대표의 요청에 따라 특별 감시와 시찰을 실시한다(정전협정 제28항).

- (6) 본부를 군정위 본부구역 내에 설치한다(정전협정 제42항 ㄱ목).
- (7)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 규정을 채택한다(정전협정 제42항 ㄴ목).
- (8) 공작인원의 증명 문건 및 휘장 또 임무 집행 시에 사용하는 일체 차량, 비행기 및 선박의 식별 표식을 발급한다(정전협정 제42항 ㅅ목).
- (9) 매일 회의를 연다(정전협정 제44항).
- (10)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결과에 관하여 정기 보고를 받는다(정전협정 제46항).
- (11) 모든 보고서를 유엔사군정위에 송부한다(정전협정 제47항).
- (12) 정전협정이 규정하는 보고 및 회의기록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한다(정전협정 제48항).
- (13) 보다 효과적인 정전 유지를 위해 유엔사군정위에 정전협정의 수정 혹은 증보에 대한 건의를 제출한다(정전협정 제49항).
- (14) 유엔사군정위와 통신 연락을 취한다(정전협정 제50항).
- (15) ‘2016년 중감위 정전 의무 및 기여 확대 재확인’ 각서에 명시된 중감위의 임무는 다음과 같이 4개의 범주로 분류된다:
- (a) 비무장지대 안팎에서 유엔사군정위의 정전협정 관련 작전활동을 참관한다. 유엔사 규정 551-4에 따라 유엔사군정위가 비무장지대 안팎에서 실시하는 모든 정전협정 관련 작전/활동을 초청 또는 요청을 받아 참관한다.
- (b) 관련 군사연습을 참관한다. 정전협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지휘소 연습, 야외 기동훈련 혹은 실사격 훈련을 초청 또는 요청을 받아 참관한다.
- (c) 유엔사군정위의 정전협정 교육 및 견학을 지원한다. 정전협정 및 정전협정 이행을 위한 지시와 규정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유엔사군정위가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 (군정위 본부구역)과 한국군 본부급 제대, 부대, 군 교육기관을 방문해 실시하는 정전협정 교육 및 견학을 자원이 가용한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 (d) 정전협정 제13항 ㄷ목과 ㄹ목에 명시된 정전협정의 ‘정신’에 입각해서 유엔사/주한미군의 전개/활동을 참관한다. 미 육군 사전배치재고물자 및 해병 사전배치부대 시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순환 부대들을 방문해 ‘정전협정 정신’의 준수 여부를 참관하고 평가한다.

f. 한국 합참의장은 정전협정의 제반 조항 및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실행하기 위한 유엔군 사령관의 노력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데 동의하였다. 연합군사령부(연합사) 사령관은 유엔군 사령관의 이러한 노력을 지원한다. 다음과 같은 연합사 구성군 사령관들이 이 기능을 수행한다:

- (1) 지상 구성군 사령관(CGCC).
- (2) 해군 구성군 사령관(CCNCC).

- (3) 해병 구성군 사령관(CMFC).
- (4) 공군 구성군 사령관(CACC).
- (5) 연합 특수전 사령관(CDR, CUWTF).
- (6) 연합 심리전부대 사령관(CDR, CPOTF).
- g. 아래 열거된 인원들은 유엔군 사령관을 지원한다:
 - (1) 주한미군 사령관(CDR, USFK).
 - (2) 미 8 군 사령관(CGUSEA).
 - (3) 주한 미 공군 사령관(CUSAFK).
 - (4) 주한 미 해군 사령관(CNFK).
 - (5) 주한 미 해병대 사령관(CDR, MARFORK).
 - (6) 주한 미 특전 사령관(CDR, SOCKOR).

h. 본 규정 제1장 1-4g항 및 1-4h항에 명시된 사령관들은 정전협정 및 본 규정의 제반 조항들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시행 지시서를 발전시킨다. 시행 지시서 및 그 수정 사항의 사본을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에 전송한다. 정전 업무와 관련하여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와 직접 연락하고 소통하는 것을 허가하고 권장한다.

i. 중감위, 유엔사군정위,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및 유엔사군정위 유관 기관들(특별조사반 및 유엔사군정위 자문단)을 위한 자금은 주한미군 규정 700-11 유엔사 연락단 지원에 의거하여 결정된다.

1-5. 방침

정전협정은 한국과 북한 간 평화협정이 각측 동맹들과의 공조를 통해 수립될 때까지 한반도의 지속적인 안정을 뒷받침하는 문건이다. 한국의 경제, 사회 및 정치 활동은 이러한 안정을 토대로 하고 있다. 유엔사로 전입되는 모든 유엔사 회원국 소속 방위 및 군 병력들은 전입 교육의 일환으로 정전협정, 정전협정 후속합의서 및 추후 수립된 제반 규정에 대한 충분한 브리핑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전입 교육은 유엔군 사령관이 승인한 적절한 전입 수속 기관에서 실시한다. 또한, 각급 지휘관은 모든 예하 인원이 정전협정 제반 조항과 본 규정의 세부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본 규정이나 관련 근거로 해소되지 않는 의문사항은 비서처를 통해 유엔사군정위에 문의한다.

제 2 장

유엔군 사령관의 정전 책임에 대한 지원

2-1. 서언

유엔군 사령관은 정전협정의 제반 규정 및 조항의 준수를 보장하고 집행할 책임이 있다.

2-2. 개요

a. 정전협정은 한국과 북한 간 최종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이 각측 동맹들과의 공조를 통해 달성될 때까지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해 6.25 전쟁 교전 당사자들 간에 체결된 상호 합의이다. 유엔군 사령관은 군사분계선 이남의 한국 영토 전체를 포함하는 지역에서 정전협정 제반 조항을 집행할 책임이 있다. 유엔사와 본 규정의 범주에 속하는 모든 군 부대들은 정전협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유엔사는 북한군/중국인민지원군도 정전협정을 최대한 준수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정전협정 조항이 준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엔사 소속 모든 인원에 대한 철저한 훈육과 교육, 효과적인 통제 절차 적용 및 유엔군 사령관의 지시를 집행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b. 인원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지 않거나 정전협정에 대해 무관심 혹은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으며, 이는 정전협정 위반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위반행위는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정전협정을 위협하고 적대행위 재개 가능성을 증대시키게 된다.

c. 한국에 있는 모든 군 지휘관들은 국적에 관계없이 본 규정에 포함된 직무나 활동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하게 될 모든 인원들에게 다음 사항을 적절히 교육시켜야 한다:

(1) 정전협정 기본 조항.

(2) 정전협정 및 정전교전규칙 조항에 따른 각 개인의 제반 임무와 책임.

(3)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및 서북도서에 초점을 둔 정전협정의 철저한 준수 필요성.

(4) 정전협정 위반으로 추정되는 사항 혹은 실제 위반사항을 모두 보고할 의무 및 이러한 위반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이유.

(5) 정전 유지 노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관련 작전 정보 보고.

(6) 유엔사 및 북한군/중국인민지원군 매장지역 발견 시 보고 및 정전협정에 따른 적절한 유해 발굴과 처리 지원.

(7) 한국 내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모든 지침, 특히 비무장지대 완충지역 인근에서의 항공기 운항을 통제하는 모든 지침 숙지 및 철저한 준수의 중요성. 비무장지대 완충지대는 한강하구, 북방한계선 및 군사분계선 연장선을 포함함(유엔사/연합사 규정 525-4 유엔사/연합사 정전교전규칙). 항공기를 운항하는 모든 인원은 이러한 지침을 숙지해야 함.

(8) 유엔군 사령관의 명백한 승인 없이 북한군/중국인민지원군 측 인원 혹은 이들과 같이 근무하는 인원들과의 친교 혹은 비공식적 소통 금지.

d.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은 비서처의 장(長)으로서 정전협정, 정전협정 후속합의서 및 본 규정의 조항을 교육하고, 유지하며, 시행함에 있어 유엔군 사령관의 직속 대리인 역할을 수행한다.

2-3. 지상군

a. 비무장지대 민정경찰은 최전방 지상군 부대로서, 정전협정 위반과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사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본 규정상 비무장지대 민정경찰의 역할은 비무장지대 내 경계초소(GP), 관측소(OP) 및 유엔군사령부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에서 근무하는 한국군 및 미군이 수행한다. 비무장지대 민정경찰은 경계,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을 제공하기 위해 운용된다. 이는 유엔사 측 군정위 본부구역 “갑”구 및 “을”구의 유지 및 통제를 포함한다.

- b. 한국 합참의장은 정전협정 준수 의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갖는다:
- (1) 유엔군 사령관의 특정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원과 화기가 비무장지대 내로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 (2) 유엔사군정위의 특정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원도 군사분계선을 통과하지 않도록 한다(정전협정 제7항).
 - (3)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일체 지상 군사역량이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 지역을 존중하도록 한다(정전협정 제14항).
 - (4)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일체 해상 군사역량이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 육지에 인접한 해면을 존중하며 한국 영토 전반에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하도록 한다(정전협정 제15항).
 - (5)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일체 공중 군사역량이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 지역 및 이 양 지역에 인접한 해면의 상공을 존중하도록 한다(정전협정 제 16 항).
 - (6) 비무장지대/한강하구를 포함하는 한국 육지에서의 정전협정 준수를 보장한다 (정전협정 제14항).
 - (7) 비무장지대/한강하구/서북도서 전역에 걸쳐 유엔사군정위와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한다.
 - (8) 유엔군 사령관의 지시 권한에 따라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유엔사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민정경찰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을 제공한다(정전협정 제 1 권 협정 본문, 제 2 권 지도,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사 관련약정 2b(8)항 및 2b(9)항).
 - (9) 비무장지대 안에서 혹은 한강하구를 따라 작전을 수행하는 모든 인원들에게 비무장지대 근무 투입 전에 정전교전규칙(유엔사/연합사 규정 525-4)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며, 비무장지대 내의 작전부대는 정기적으로 정전교전규칙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한다.
 - (10) 비무장지대 내 모든 유엔사 GP 및 안보견학장으로 운영되는 유엔사 OP에 유엔기가 계양되도록 한다. 비상주 GP/OP는 유엔사 작전참모부를 통해 유엔기 철거 절차를 거쳐야 한다.
 - (11) 한강하구 내 선박 및 인원에 대한 적절한 운영 및 통제를 보장한다.
 - (12) 비무장지대/한강하구 인근 협조고도 이하 상공에 대한 적절한 운영 및 통제를 보장한다.
 - (13) 항공기 월경 방지 경고 표지판, 남측 비무장지대(유엔사 측 군정위 본부구역 “갑”구 제외) 내 안전 소로 및 진입로, 그리고 비무장지대로 진입하는 모든 도로에 한강하구 및 남방한계선을 따라

설치된 남방한계선 표식물을 점검하고 관리한다. 군사분계선 표식물 관리는 착오로 인해 양측 간 적대행위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엔군 사령관의 서면 승인 없이는 실시하지 않는다.

(14) 유엔사 규정 525-4에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작전지역으로 규정된 지역을 제외한 유엔사 측 군정위 본부구역 “을”구를 포함하는 남측 비무장지대의 유지 및 통제(유엔사 비무장지대 민정경찰이 실시) 등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15)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의 작전지역을 제외한 군정위 본부구역을 포함하는 비무장지대 내에서 경비를 제공한다.

(16) 한강하구 내 민간 항행 관련 규칙을 이행 및 집행한다.

(17) 비무장지대/한강하구를 출입하는 모든 인원들이 적절한 신분증을 발급받고 지참하도록 하며, 모든 장비는 적절하게 표시되도록 한다(제10장).

(18) 남측 비무장지대, 유엔사 측 군정위 본부구역 “갑”구와 “을”구, 서북도서, 대성동 영농지역을 포함하는 한국 내에서 유엔사군정위,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중감위를 위한 이동의 편의(지뢰가 제거된 이동로) 및 협조를 보장한다.

(19) 대성동 영농지역에 대한 경비를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과 협조한다(서식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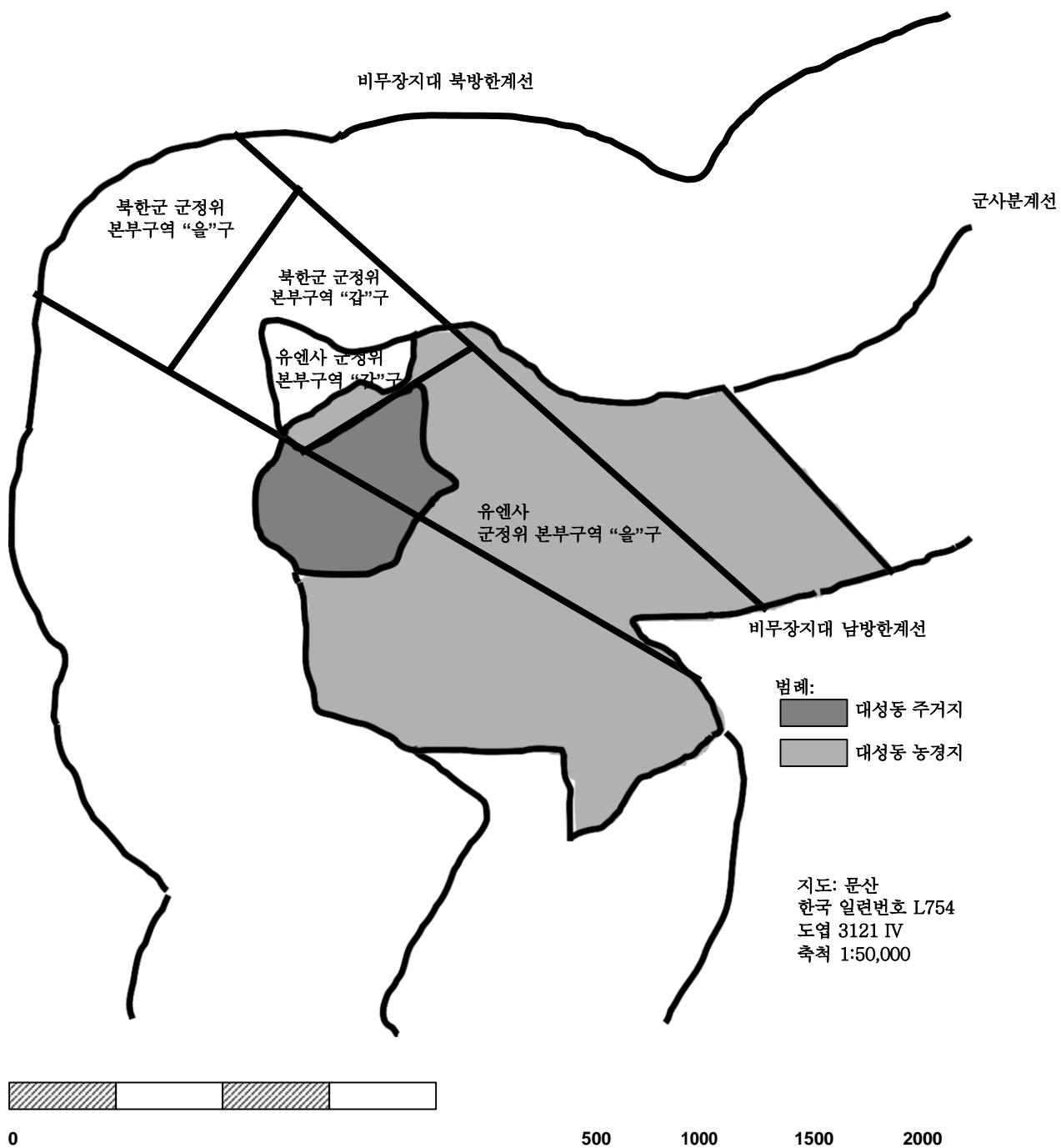
(20) 비무장지대/한강하구에 배치된 부대에 유엔사 규정 551-4, 유엔사 규정 551-6, 유엔사/연합사 규정 525-4 정전교전규칙 등 모든 관련 규정의 최신판 사본을 비치하도록 한다.

(21) 비무장지대를 출입하는 민간 용역업체 직원들이 유엔사군정위의 사전 승인을 받고 인원과 차량에 적절한 식별표시를 하도록 한다.

(22)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이 군정위 본부구역, 대성동 마을 및 영농 지역에 언제든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23) 비무장지대/한강하구의 지리적 경계 내에서 북한군/중국인민지원군 측 인원이나 유엔사/한측 인원에 의해 발생한 정전협정 위반사항을 보고한다.

(24) 선박이 서해의 북방한계선 이북 수역 혹은 동해의 북방한계선 이북 수역을 침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수단을 서해/동해 인근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모든 인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실시한다.



서식 2-1. 대성동

(25)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및 북한군/중국인민지원군 통제 지역 상공을 침범한 모든 항공기를 보고한다.

(26) 비무장지대와 한국 인접 수역 및 그 상공에 관해서 해군과 관련된 정전협정 제반 조항을 이행하고 실행한다(정전협정 제15항).

(27) 한국의 동해안과 서해안에서 운행하는 모든 선박이 정전협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28) 항공기가 한강하구 상공에 진입하고/하거나, 서해의 북방한계선 이북 상공 혹은 동해의 북방한계선 이북 상공을 침범하지 않도록 한다.

(29) 유엔군 사령관의 지시가 있을 시 비무장지대/한강하구/서북도서 상공과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해면의 상공을 침범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지원한다(정전협정 제16항).

2-4. 공군

공군 구성군 사령관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갖는다:

a. 비무장지대/한강하구 전역과 한국 및 이 양 지역에 인접한 수역의 협조고도 이상의 상공에 관한 정전협정 제반 조항들을 이행하고 실행한다(정전협정 제16항).

b.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일체 공중 군사역량이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 지역 및 이 양 지역에 인접한 해면의 상공을 존중하도록 한다(정전협정 제16항).

c. 유엔군 사령관의 지시가 있을 시 비무장지대/한강하구/서북도서 및 이와 인접한 해면의 상공을 침범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지원한다(정전협정 제16항).

2-5. 해군

해군 구성군 사령관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갖는다:

a.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일체 해상 군사역량이 비무장지대/한강하구/서북도서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 육지에 인접한 해면을 존중하며 항구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하도록 한다(정전협정 제15항).

b. 유엔군 사령관의 지시가 있을 시 비무장지대/한강하구/서북도서와 인접한 해면을 침범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지원한다(정전협정 제15항).

제 3 장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한강하구

3-1. 개요

정전협정 제 1 조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한강하구를 설정하였고, 각 측의 비무장지대 유지 및 통제를 포함하는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을 실시할 권한을 양측에 각각 부여하였다.

a.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들은 비무장지대를 수립하기 위해 모든 군사력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 킬로미터 밖으로 철수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군사분계선은 1,292개의 군사분계선 표식물로 표시되었고, 이를 통해 비무장지대는 북측 구역과 남측 구역으로 분리되었다. 이 폭 4킬로미터의 완충지대는 적대행위 재개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병력을 분리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그러나 정전협정 체결 후 북한군은 비무장지대에서 병력을 완전히 철수시키지 않았고, 이에 따라 유엔사와 한국군은 연합사가 계획된 방어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관측과 경보를 제공하기 위해 비무장지대 내에 병력을 주둔시킬 수 밖에 없게 되었다.

b. 지난 60년간 군사분계선 표식물의 대다수가 침식되고 부식되었다. 2016년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주관하에 실시된 측량 결과, 최초 설치된 군사분계선 표식물 중 식별 가능한 표식물은 15퍼센트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현재 군사분계선의 위치를 정의한 권위있는 자료는 정전협정 체결 당시 합의된 군사분계선이 표시된 정전협정 제2권(지도)이 유일하다. 유엔사 부대들은 전방 책임지역 내 현존하는 식별 가능한 군사분계선 표식물을 존중함과 동시에, 정전협정 지도 상에 정의된 군사분계선을 준수한다. 2016년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주관하에 실시된 정전협정 군사분계선 프로젝트 결과, 군사분계선의 정확한 위치를 세계측지계(WGS-84) 지도 상에 모두 표시한 포괄적인 기술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군사분계선 프로젝트 보고서 전문 복사본은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작전과 (이메일: pacom.yongsan.uncmac.list.asec-o@mail.mil)로 연락하여 받아볼 수 있다.

c. 다음 두 가지 목적을 위해 군사분계선 이남에 철책이 세워졌다. 첫째, 북한군의 침투를 차단하는 장벽으로 사용하고, 둘째, 북쪽으로의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서이다. 본 규정에서는 이 철책의 명칭을 일반전초(GOP) 철책이라 한다. 현재 GOP 철책의 2/3 가량이 비무장지대 안쪽에 있고 일부 구간은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몇 백 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GOP 철책으로 인해 비무장지대의 남방 한계선이 어디인지에 대해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 GOP 철책은 비무장지대의 경계와는 관련이 없음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비무장지대의 남방한계선은 정전협정 제2권(지도)에 명시되어 있다.

d. 남측 비무장지대에 대한 출입은 유엔사군정위 비서처가 출입을 승인한 인원과 민사행정 제공에 필요한 인원에게만 허가된다. 유일하게 예외가 적용되어 비무장지대 방문이 허가되는 인원은 유엔사 규정 551-5 및 551-6에 의거하여 인가된 안보견학장을 안보견학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인원들뿐이다.

e. 유엔사 비무장지대 민정경찰이 지뢰가 ‘없는’ 것으로 확인한 지역을 제외한 비무장지대 전역은 지뢰지대로 간주한다.

f. 한강하구는 정전협정 제2권(지도)에 표시되어 있다. 한강하구 와 각 측의 군사통제 지역 간의 경계선은 만조 시 수제선이다. 착오를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완충지대가 설정되었다. 일방의 선박, 함정 혹은 배는 다른 일방이 통제하는 수역이나 육지에 접근해서는 안 되며, 상대 측의 한강하구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안쪽으로 접근해서도 안 된다(정전협정 후속합의서 “A”). 양측 모두 한강하구가 비무장 상태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양측은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강하구에 4척의 경비정과 최대 24명의 민정경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인가된다. 유엔사 혹은 한측 병력이 한강하구에 진입하고자 할 시 반드시 유엔군 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책임 및 권한

a. 유엔군 사령관은 유엔사 측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 내 모든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서북도서와 서해, 동해의 작전 부대들은 정전협정과 관련해 유엔군 사령관의 통제를 받는다.

b. 한국 합참의장은 한국군 전방 부대 지휘관들을 통해:

(1) 남측 비무장지대 내(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의 책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제외)에 있는 항공기 월경 방지 경고 표지판, 남방한계선 표식물, 안전 소로 및 접근로, 한강하구

남방한계선 표식물들을 관리할 책임을 지닌다. 또한 유엔군 사령관의 지시가 있을 시 한국군 전방 부대 지휘관들은 유엔사 측 책임구역(서식 3-2 참조) 내 군사분계선 표식물 관리 임무도 시행한다.

(2) 유엔사 측 군정위 본부구역 “갑”구를 제외한 남측 비무장지대에서 유지 및 통제를 포함한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을 계획하고 실시한다.

3-3. 표식물/표지판 종류

비무장지대 및 한강하구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표식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a. 군사분계선 표식물:

(1) 군사분계선은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설치된 총 1,292개의 표식물 (서식 3-1)로 표시되어 있다. 정전협정 후속합의서에 의거하여 비무장지대는 군사분계선 표식물 관리를 위해 “갑”구와 “을”구로 분리되었다 (서식 3-2). 북한군/중국인민지원군은 “을”구, 유엔사는 “갑”구에 있는 모든 군사분계선 표식물을 관리할 책임을 지닌다. 그러나, 그 이후 군사분계선 관리 작업 중 발생한 사건들로 인해 유엔군 사령관은 적대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오판의 위험을 감안하여 군사분계선 표식물 관리를 중단할 것을 지시하였다. 군사분계선 표식물 관리는 여건이 허락되면 재개될 것이다.

비무장지대 “갑”구 군사분계선 표식물

좌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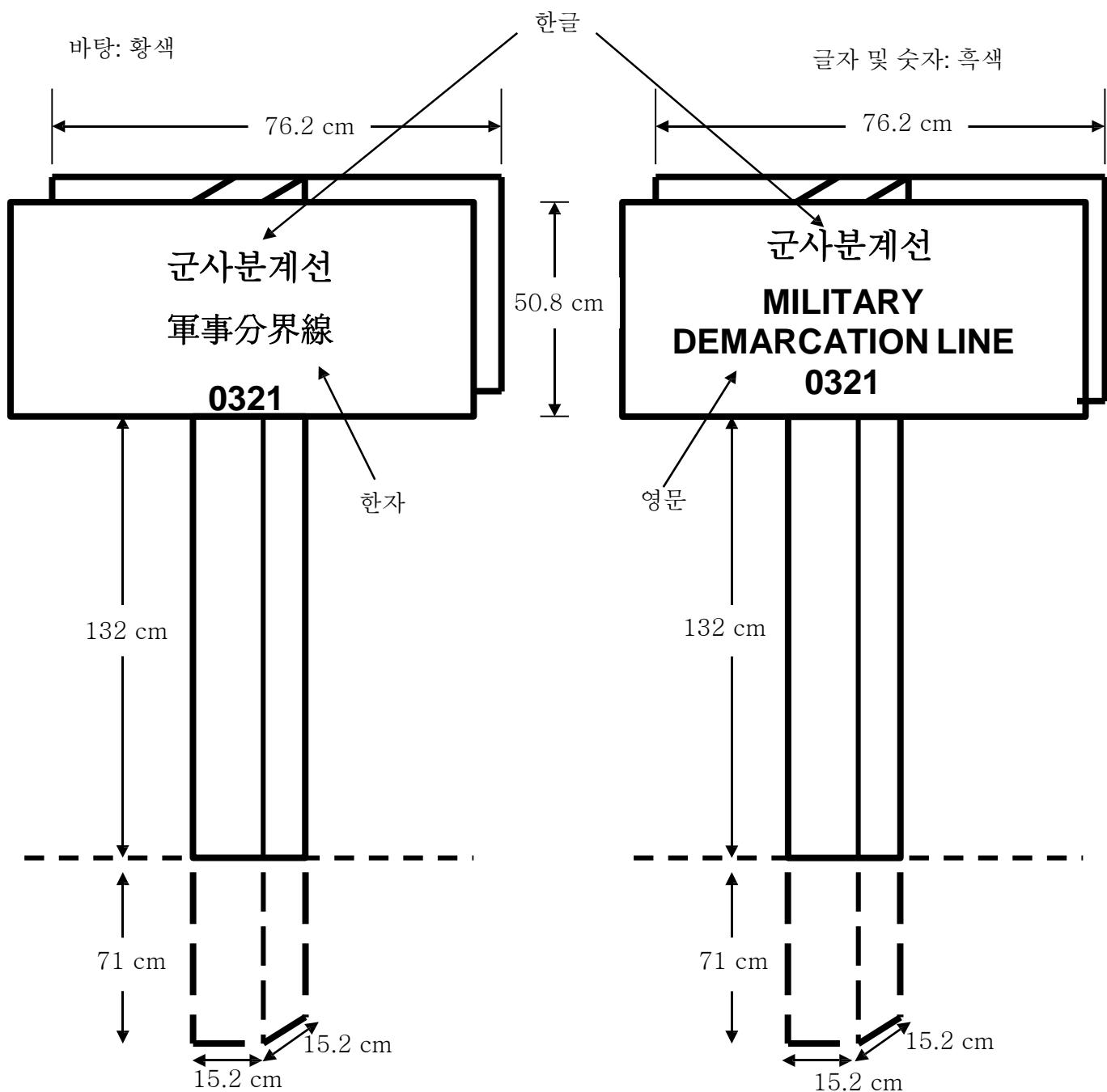
0001 - 0204	BG 969911 - CH 054063
0293 - 0442	CH 142194 - CH 271346
0566 - 0707	CH 465441 - CH 684402
0862 - 0982	CH 928441 - DH 115414
1141 - 1231	DH 310474 - DH 401648

* 쌍방이 합의한 공식적인 군사분계선 표식물 좌표가 없기 때문에 표식물 좌표는 대략적인 좌표임.

* 상기 좌표는 도쿄-B 측지계를 WGS-84 측지계로 변환한 것임.

* 2005년 7월, 미 국립지리정보국이 군사분계선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여 군사분계선의 위치를 재정립하였음.

* 2015~2016년, 유엔사군정위의 주도하에 유관 기관들과 식별 가능한 군사분계선에 대한 연합 측량 작업을 실시하였다. 군사분계선 측량 보고서 전문(식별 가능한 군사분계선 표식물의 좌표 목록 포함)은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작전과 (이메일: pacom.yongsan.uncmac.list.asec-o@mail.mil)로 연락하여 받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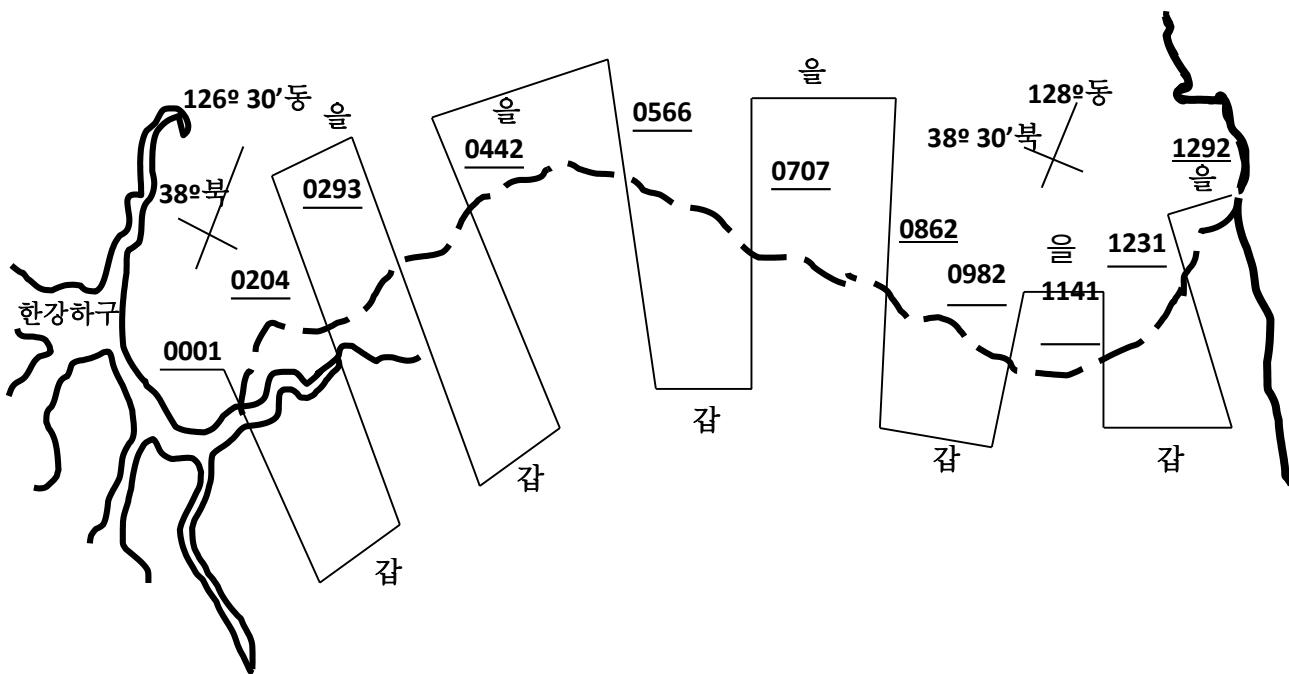


북쪽에서 본 표식물

남쪽에서 본 표식물

군사분계선 표지판은 금속으로 제작

서식 3-1. 군사분계선 표식물 형태



지도: TPC-10 B & C
(전술 조종 안내도)

갑 = 유엔사 측 구역
을 = 북한군 측 구역

서식 3-2.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구역

(2) 간혹 군사분계선이 강 중앙에 형성되어 있는 곳이 있다(정전협정 후속합의서 “H(3)”). 1958년 1월 28일 열린 제 168 차 비서장 회의에서 합의된 후속합의서는 이러한 경우에 적용될 특별 군사분계선 표식물 관리 절차를 마련하였다. 군사분계선이 강 중앙을 지나는 임진강, 금성천 및 북한강에서는 표식물이 양쪽 제방에 번갈아 설치되었다(정전협정 후속합의서 “H(3)”).

(a) 북한군/중국인민지원군은 임진강과 북한강의 북한군/중국인민지원군 측 강둑에 다음 비무장지대 “갑”구 표식물을 유지하는 데 동의하였다:

임진강 - 0350, 0351, 0353, 0357, 0359, 0361.

북한강 - 0863, 0864, 0866, 0868, 0870, 0872, 0874, 0876, 0878, 0880, 0882, 0884, 0886, 0888, 0890.

(b) 유엔사는 금성천의 유엔사 측 제방에 다음 비무장지대 “을”구 표식물을 유지하는 데 동의하였다: 0818, 0820, 0822, 0824, 0826, 0828, 0830, 0832, 0834. 이 표식물들은 (유엔군 사령관의 지시가 있을 시) 연합사령관이 지정한 지휘관들이 관리한다.

b. 남방한계선 표식물: 비무장지대의 남방한계선을 표시하는 표지판(서식 3-3)은 남방한계선과 (포장 혹은 비포장) 도로가 만나는 모든 비무장지대 출입로에 설치되어야 한다. 이를

표지판은 남방한계선으로 접근하는 방향에서 뚜렷이 보여야 하며 적절히 관리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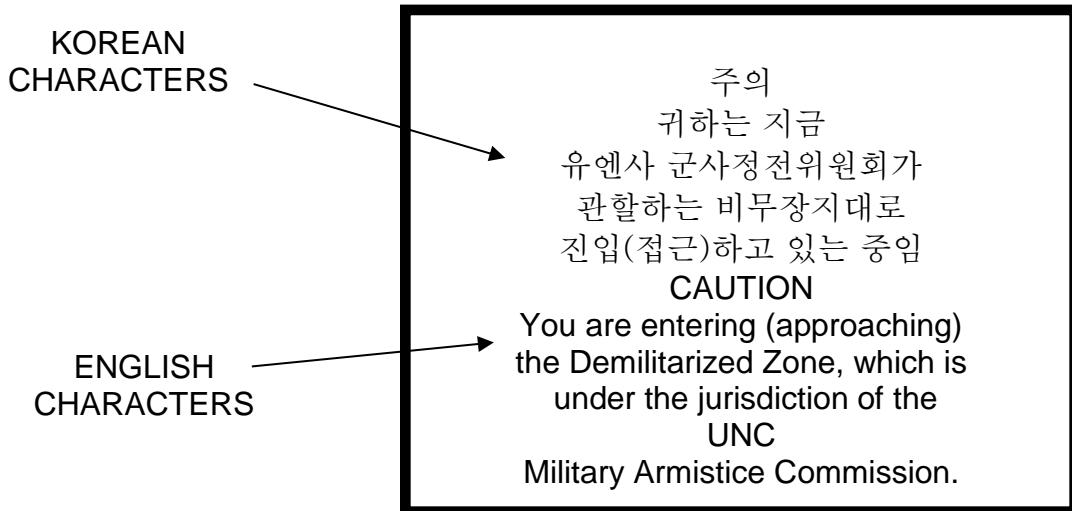


Figure 3-3. Demilitarized Zone Southern Boundary Line Sign

표지판은 최소 사방 61x61 센티미터 크기의 정사각형으로 영문과 한글 문구가 뚜렷이 보이도록 해야 함. 확실하게 읽힐 수 있도록 배경색과 글자색을 조합해야 하고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c. 비무장지대 항공기 월경 방지 경고 표지판: 비무장지대 상공으로의 우발적인 진입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주황색으로 도색한 항공기 월경 방지 경고 표지판을 남쪽으로 향하게 하여 300~400 미터 간격으로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과 대체로 평행하게 설치한다. 경고 표지판 중 일부는 비무장지대 안쪽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이러한 경고 표지판에는 전부 X 자를 도색함으로써 비무장지대 내에 위치하고 있음을 나타내야 한다. 항공기 월경 방지 경고 표지판의 규격과 표식물 번호의 색깔, 크기 및 글씨체는 서식 3-4a와 3-4b에 명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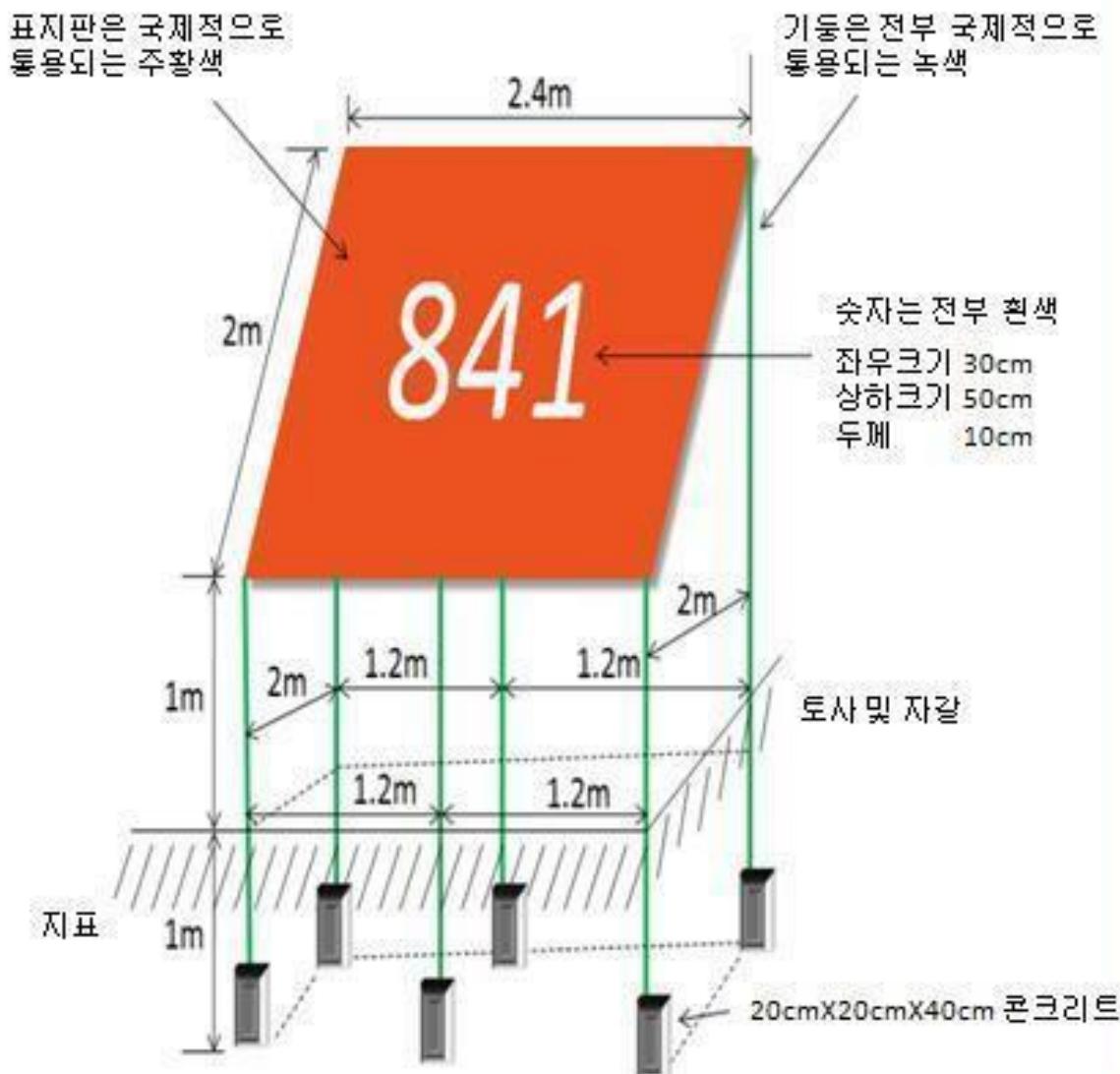
d. 한강하구 표식물: 선박 운항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한강하구에 적용되는 제한사항을 경고하기 위해 한강하구의 남방 한계를 십자형 표식물(서식 3-5)로 표시하였다. 표식물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서식 3-6):

표식물 번호	위치*	표식물 번호	위치 *
1	BG 467755	7	BG 562820
2	BG 481749	8	BG 654867
3	BG 491738	9	BG 668857
4	BG 533751	10	BG 809832
5	BG 542783	11	BG 815824
6	BG 562787	12	BG 831830

* 상기 좌표는 도쿄-B 측지계를 WGS-84 측지계로 변환한 것임.

비무장지대 항공기 경고 표지판 기준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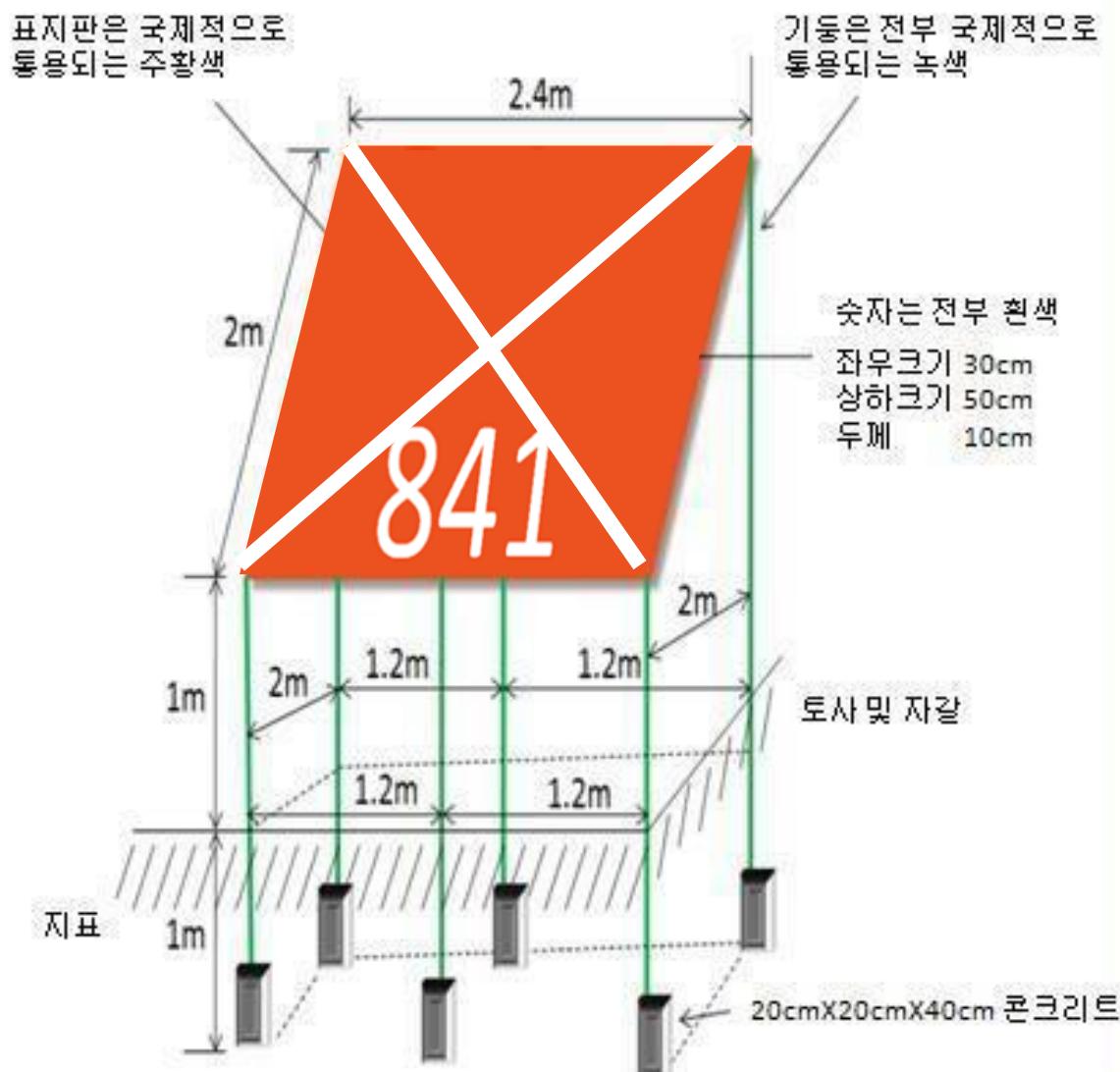
표준 숫자체: 0, 1, 2, 3, 4, 5, 6, 7, 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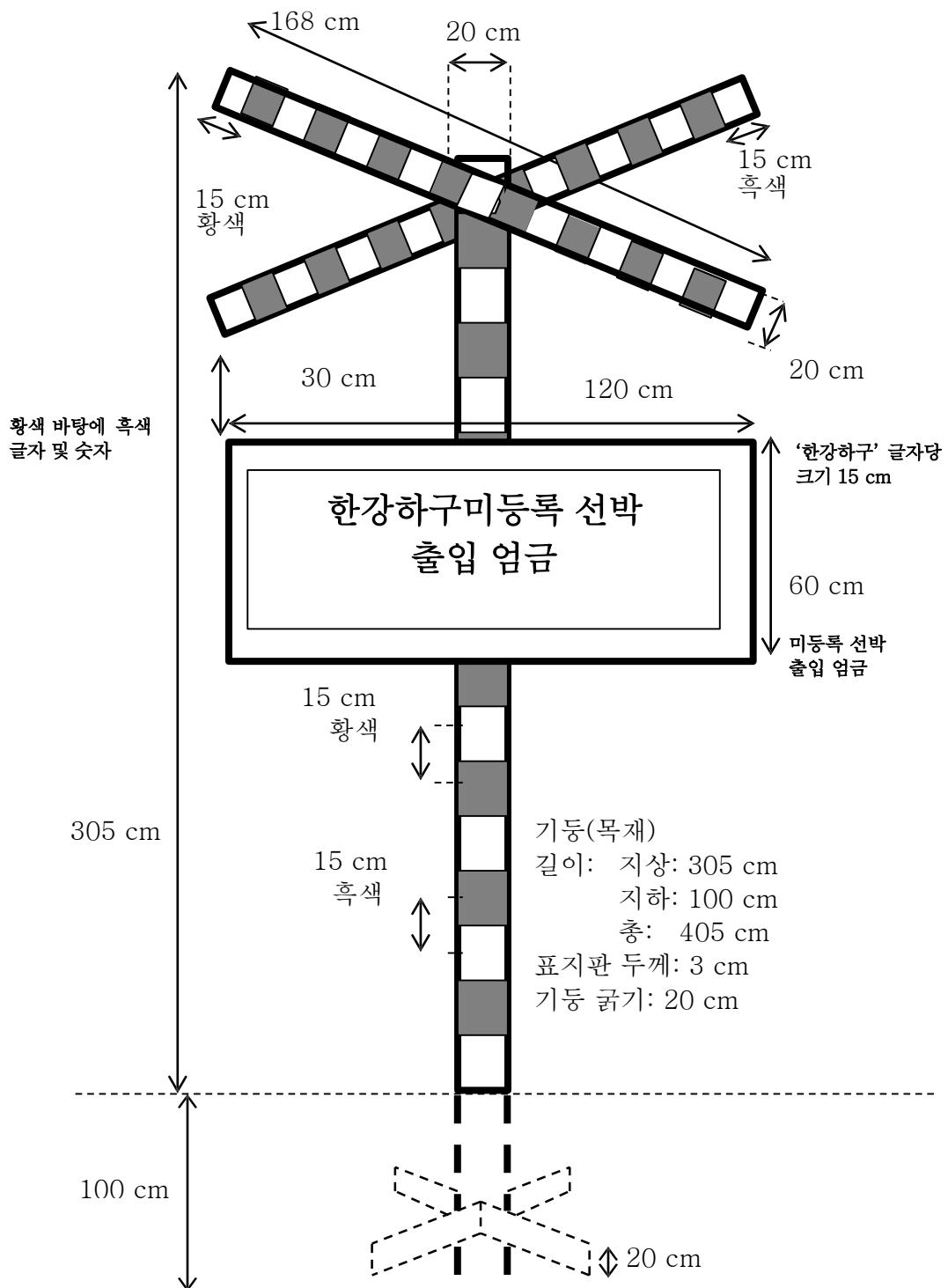
서식 3-4a. 비무장지대 항공기 월경 방지 경고 표지판 표준 규격(비무장지대 밖)

비무장지대 항공기 경고 표지판 기준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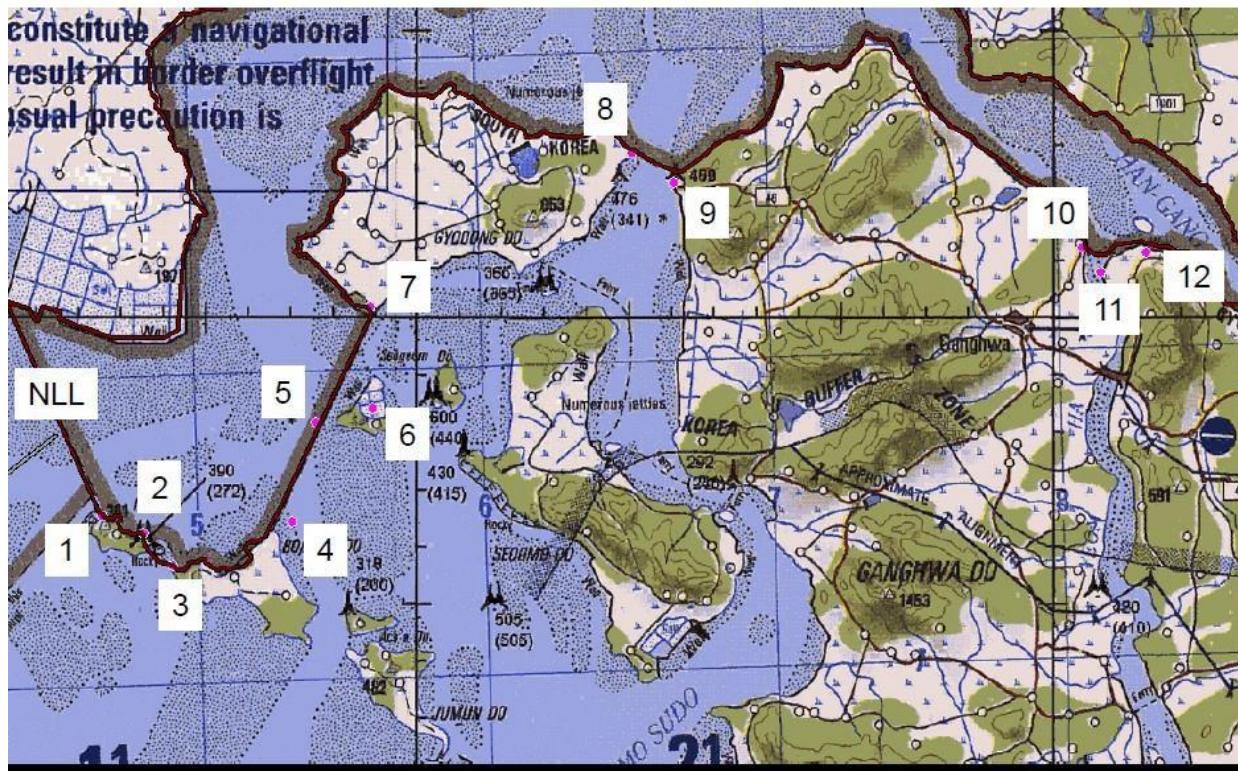
표준 숫자체: 0, 1, 2, 3, 4, 5, 6, 7, 8, 9



서식 3-4b. 비무장지대 항공기 월경 방지 경고 표지판 표준 규격(비무장지대 안)



서식 3-5. 한강하구 남방한계선 표식물



서식 3-6. 한강하구 남방한계선 표식물 1~12 번 위치

3-4. 표식물/표지판 점검 및 관리

a. 군사분계선 표식물: 비무장지대에 상존하는 위험성 때문에 군사분계선 표식물 점검, 교체 및 관리는 유엔군 사령관의 명백한 승인이 있을 때에만 실시한다.

(1) 군정위 본부구역 “갑”구에서의 점검 및 관리 활동은 유엔사 비무장지대 민정경찰 혹은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이 인가한 관리 인원이 실시한다.

(2) 비무장지대와 군정위 본부구역 “을”구에서의 점검 및 관리 활동은 유엔사 비무장지대 민정경찰 혹은 각 지역 내 책임 지휘관이 지정한 인가된 관리 인원이 실시한다.

(3) 유엔군 사령관의 승인이 있을 시, 군사분계선 표식물 점검은 유엔사 비무장지대 민정경찰이 실시한다. 점검 인원들은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이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군정위 본부구역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표식물 중 군사분계선을 넘어야만 점검이 가능한 표식물(임진강, 금성천 및 북한강)에 대한 점검은 유엔사군정위 점검반만 실시한다. 이러한 점검은 북한군/중국인민지원군 측의 동의 및 현장 입회 없이는 실시될 수 없다.

(4) 유엔군 사령관이 군사분계선 표식물 관리를 재개하기로 결정할 경우, 유엔사군정위 비서처는 전방 사단장들과 협조하여 각 사단이 세부 추진 계획이 포함된 서면 신청서를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에게 제출, 유엔사 작전참모부장(작참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b. 남방한계선 표지판: 남방한계선 표지판 점검과 관리는 유엔사 비무장지대 민정경찰이 실시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허가는 필요치 않다.

c. 항공기 월경 방지 경고 표지판(AWPM): 지상구성군사령부(지구사) 전투지원과는 항공기에서 항공기 월경 방지 경고 표지판이 식별 가능하고 적절히 관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례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유엔사군정위에 제공한다. 지구사 전투지원과는 항공기 월경 경고 표지판에 대한 연례 점검 완료 직후 각 표지판의 사진 자료를 유엔사군정위에 제공한다. 또한 유엔사군정위는 육상 및/또는 공중에서 항공기 월경 방지 경고 표지판에 대한 불시 점검을 매년 실시한다. 유엔사군정위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항공기 월경 경고 표지판의 상태와 유효성을 유엔사 부참모장과 유엔사 작참부장에게 매년 보고한다.

3-5. 비무장지대 내 공사

a. 정전협정 제10항은 비무장지대 내 ‘민정경찰’을 비롯한 남측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민사행정을 유엔군 사령관의 책임하에 둔다. 이 권한에 의거하여 비무장지대 내 모든 공사활동은 유엔군 사령관의 책임과 권한에 따라 처리된다.

b. 유엔군 사령관은 비무장지대 내 공사 승인 책임을 공사 유형에 따라 유엔사 작참부장과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에게 위임하였다. 공사 유형에 따른 승인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기존 구조물과 보급로에 대한 개선공사나 대규모 보수공사 및 기존 구조물 교체공사 신청은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이 승인함.

(2) 기존 군사 시설 내 기본적인 생활 지원 시설 공사 신청은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이 승인함.

(3) 군용 진지, 기존 군사 시설 이외의 신규 시설, 비무장지대 내 군 작전병력을 확대하는 시설 또는 남측 비무장지대의 요새화나 무장화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시설의 공사 신청은 유엔사 작참부장이 승인함.

c. 유엔사 통제구역인 비무장지대에 주둔하는 한국 야전군이나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군정위 본부구역의 경우)는 유엔사/연합사 작참부/지구사 작참부 현행작전처 지상작전과에 신규 공사신청서를 제출한다. 지상작전과는 각 신청서에 누락된 내용이 없는지 검토한 후 승인·불허 여부에 대한 의견과 함께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에 참모협조를 실시한다. 유엔사군정위 비서처는 승인 권한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승인·불허 여부를 직접 결정하고, 유엔사 작참부장 승인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불허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지상작전과와 유엔사 법무실을 경유해 유엔사 작참부에 보낸다. 비무장지대 내 공사신청서에 대한 유엔사의 승인·불허 결정이 내려지면 지상작전과는 이를 한국 야전군이나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에 통보한다. 처리가 완료된 공사신청서 및 관련 문건은 기록 유지를 위해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작전과에 사본 1부를 제공한다.

d. 공사신청서는 다음 사항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1) 공사 신청 부대

(2) 공사 목적 및 작전적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

(3) 남방한계선, 군사분계선, 북한군 초소, 기존 초소 및 기반시설까지의 거리가 표시된 공사부지 사진을 첨부한 세부 약도나 지도. 작업 범위에 대한 설명과 묘사

(4) 치수 및 도면을 포함한 시공 또는 철거될 시설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

(5) 최소 8계단 WGS-84 군사좌표로 된 공사부지 위치

(6) 가장 가까운 북한군 초소까지의 거리(단위: 미터)와 방향(단위: 도/미리) 및 북한군의 관측 가능 여부

(7) 착공부터 준공까지 공사 일정

(8) 관련 유엔사 규정. 기존 방침에 대한 예외 요청 시 타당한 이유 명시

(9) 공사 기간 중 경계 계획 및 경계태세 변경 여부

(10) 북한군의 예상 대응 및 이에 대비한 위험경감계획

(11) 승인권자가 공사 관련 내용과 맥락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타 정보

e.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의 승인을 요하는 모든 비무장지대 내 공사신청서는 착공 예정일로부터 최소 2주 전까지 제출해야 하고, 유엔사 작참부장의 승인을 요하는 공사신청서는 착공 예정일로부터 최소 4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f. 기존 구조물에 대한 유지/보수 신청서 및 긴급/응급 신청서는 다음 장에 기술된 출입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한다.

g. 공사신청서가 승인되면 공사 신청 부대는 다음 장에 기술된 절차에 따라 공사 인원에 대한 출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3-6. 비무장지대/한강하구 출입

a. 정전협정 제9항은 민사행정 관련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원도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엔사가 통제하는 남측 비무장지대 출입 승인 권한은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에게 있다. 비서장은 일상적인 군정위 본부구역과 대성동 출입에 대한 승인 권한을 적절한 유엔사군정위 혹은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참모장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작전 부비서장은 비무장지대 출입을 승인할 수 있고, 관리구역 통제장교들이 각자 담당하는 관리구역 출입을 적절하게 승인할 수 있도록 기준을 수립한다.

b. 다음 인원들은 비무장지대/한강하구 진입이 인가된다.

(1) 유엔사군정위 인원: 유엔사군정위 대표 5 명,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및 군정위 연락단 인원 전원.

(2) 특별조사반: 정전 관련 조사를 실시하도록 유엔사군정위 수석대표의 지시를 받은 인원. 제8장 참조.

(3) 중감위 인원: 중감위 캠프에서 캠프 보니파스까지와 군정위 본부구역 회담장까지의 직통 경로 혹은 유엔사군정위 비서처가 별도로 승인한 경로에 대해 경계상 요건 충족 시 무제한 통행 허용.

(4) 대성동 주민: 1953년 7월 27일 당시 혹은 그 이전부터 대성동 지역에 실제로 거주했으며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의 승인을 받은 한국 국적의 민간인(배우자 및 자녀 포함)은 대성동 거주 및 생계를 위한 비무장지대 출입이 인가됨. 주민이나 방문객의 대성동 출입은 경계 상황에 따름.

(5) 비무장지대에 주둔하는 한국군 전방 사단 소속 민정경찰 인원

(6) 비무장지대 안보견학장 방문객: 유엔군 사령관은 비무장지대 내 안보견학장 운영을 인가하였음. 유엔사군정위 비서처는 군정위 본부구역 내 안보견학 프로그램 운영을 책임짐. 유엔군 사령관은 군정위 본부구역 이외의 안보견학장에 대한 책임을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전방 사단장에게 위임하였음. 이러한 안보견학장 운영 관련 세부사항은 유엔사 규정 551-6에 수록되어 있음. 방문객들이 본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른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안보견학장을 벗어나 비무장지대 내 다른 지역을 출입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음.

c. 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인원들이 비무장지대/한강하구 출입을 희망할 경우, 해당 비무장지대를 책임지는 전방사단을 통해 출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방사단은 이 신청서를 유엔사/연합사 작참부/지구사 작참부 지상작전과에 제출한다. 지상작전과는 신청서에 누락된 내용이 없는지 확인한 후 승인·불허 여부에 대한 지상작전과의 의견을 첨부하여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에 참모협조를 실시한다. 비무장지대 출입신청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출입자:

(a) 신청 부대

(b) 경계 부대

(c) 출입 인원 수

(d) 출입자 명단(국적, 소속, 신원확인번호)

(e) 신원조회 확인

(f) 비무장지대/한강하구 출입 차량 및 장비 목록(제조사, 모델, 번호)

(2) 목적: 비무장지대/한강하구 출입 목적 및 작전적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

(3) 장소:

(a) 모든 방문 예정지의 위치. 최소 8자릿수 WGS-84 군사좌표로 작성

(b) 가장 가까운 북한군 초소까지의 거리(단위: 미터)와 방향(단위: 도/밀리라디안) 및 북한군의 출입 인원 관측 가능 여부

(4) 일시: 시작부터 종료까지 출입 일정

(5) 방법: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내에서 실시할 활동 설명, 필요시 그림 첨부

(6) 추가 정보:

(a) 언론사 인원 출입 시 신청서에 별도 표기. 하기 d항 참조.

(b) 기 제출된 신청서에 대한 연장 요청 시 신청서에 별도 표기. 확인을 위해 기준 신청서 번호 명시.

(c) 공사신청서와 관련된 출입일 경우 신청서에 별도 표기. 확인을 위해 기승인된 공사신청서 첨부.

(d) 기타 특이사항이나 고려사항.

(e) 출입 신청과 관련하여 승인권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기타 정보

(7) 민간 선박의 한강하구 출입 신청에 필요한 추가 요건은 본 규정 3-16항 참조.

d. 언론사 인원이 포함된 출입신청서는 출입예정일로부터 최소 72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하고, 소속과 취재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언론사의 출입신청서는 유엔사 공보실을 통해 처리된다. 언론사 인원들은 공보실에서 지정한 공보장교, 선임 공보부사관 또는 동급의 민간인 공보관과 동행해야 하며, 비무장지대 내에서는 기자용 완장을 착용해야 한다.

e. 모든 비무장지대 출입 신청서는 출입예정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전까지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에 접수되어야 한다.

f. 응급상황으로 인한 비무장지대 긴급 출입신청서는 군정위 연락단이나 연합사 지상작전과를 통해 유엔사군정위 비서처가 유선으로 승인할 수 있다. 비무장지대 출입 및 활동에 대한 기록 유지를 위해 유선으로 승인된 긴급 신청에 대한 서면 신청서를 추후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해야 한다.

g. 출입 신청은 1회 최장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그 이상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h. 유엔사 측 비무장지대/한강하구 출입이 인가된 모든 인원은 정전교전규칙에 따라 유엔사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민정경찰의 경호 및 보호를 받는다.

i. 비무장지대/한강하구에 들어가는 모든 인원과 차량은 정전협정, 정전협정 후속합의서 및 본 규정 제 10 장에 따라 적절히 식별될 수 있도록 표식을 착용/부착해야 한다.

3-7. 비무장지대 내 영농

a. 비무장지대 내 영농활동 원칙은 정전협정 후속합의서(“A”)를 통해 유엔군사령부(유엔사)와 북한군이 공동으로 인정한 바 있다. 비무장지대에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는 인원은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당시에 비무장지대에 거주하였거나 비무장지대 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며[주: 이후 수정된 후속합의서에 배우자와 자녀, 자손 포함됨], 생계 유지를 위해 비무장지대 남방 및 북방한계선 출입이 필요한 사민”으로 제한하도록 명시하였다.

b. 2016년 4월 14일 자 유엔사군정위 서한 ‘비무장지대 영농활동 – 원칙, 절차 및 정보요청’(별지 A)에 언급된 바와 같이, 대다수 전방 사단 지역의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이북 지역에서 정전협정 혹은 후속합의서에 따라 허가되지 않은 영농활동이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영농활동의 불허 및 중단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유엔사에 건의하는 것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한국 합참)의 책임사항이다. 한국 합참의 동의를 얻은 영농활동에 대해서는 신청서를 유엔사군정위에 제출해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지속적인 영농활동에 대한 서면 승인을 얻도록 한다.

c. 전방 사단장들은 비무장지대 내 영농지역의 정확한 규모, 인가를 받은 개인 영농인들과 토지관리 회사들의 이름 및 이들로부터 토지를 임대한 영농인들의 성명 등 최신 현황을 관리한다. 한국 합참은 군정위 연락단을 통해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에 매년 현황을 보고한다. 보고서에는 또한 기존에 승인된 영농지역/영농인 목록에 대한 모든 변경 요청이 포함되어야 한다.

d. 한국 합참의장은 비무장지대 영농활동이 상기 a, b, c항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전방 보병 사단장들을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매년 비무장지대 영농활동 세부현황을 전방 사단별 책임지역 내 영농활동 신청에 대한 합참의 동의서와 함께 제출한다.

e. 유엔사군정위 비서처는 한국 합참의장으로부터 매년 비무장지대 영농활동에 대한 최신 현황을 접수하고 기존 승인사항에 대한 변경 요청을 검토한다. 유엔사군정위 비서처는 기존 승인사항에 대한 모든 변경 요청의 최종 승인 권한을 지닌다. 비무장지대 내 추가 영농활동에 대한 승인 요청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승인된다. 그러나 정전협정 후속합의서(“A”)의 관련 조항에 따라 추가로 영농활동이 승인될 경우, 유엔사군정위 비서처는 북한군에 이를 통지한다.

3-8. 비무장지대 내 산불 및 특수 소방 자산 투입 승인 신청 절차

a. 정전협정 제 10항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 민사 구제 작전을 위한 항공기 운용이 가능하다.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은 유엔군 사령관의 대리인으로서 유엔사 작참부장과 긴밀히 협조하여 민간 항공기의 비무장지대 진입을 승인할 권한을 갖는다. 산불 등의 비상사태나 자연재해로 인해 인명 구조나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한 특수 소방 항공기를 비무장지대 안으로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비무장지대 내에서 발생한 산불이 자체 역량으로 통제하거나 진화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커서 항공 소방자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한국군 부대는 한국군 지휘계통을 통해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에 소방 헬기의 비무장지대 투입 신청서를 제출한다.

b. 한국군 사단은 소방 헬기 비무장지대 투입 신청서를 한국 합참을 통해 군정위 연락단에 제출하여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의 승인을 받는다. 적시에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불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보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긴급 신청은 유선으로 할 수 있다. 모든 비무장지대 내 소방 헬기 투입 신청서는 한국 국방부가 제출해야 한다. 야간에 또는 군사분계선 250미터 이내로 헬기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유엔사 작참부장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무장지대 산불 관련 최초 보고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발신: 전방 부대

수신: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경유: 유엔사 공보실

제목: 비무장지대 출입 신청

1. 취재진 규모 및 구성.

이름	직책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소속
Jacques Lapin	기자	프랑스 여권 741031229	르몽드 신문
김재승	사진기자	주민등록번호 750724-1820429	춘천 MBC

2. 비무장지대 내 출입 신청 지역 및 일정.

2014년 1월 15일

1130-1215 판문점

1230-1315 제3땅굴

1330-1400 도라전망대

3. 출입 사유.

비무장지대에서 현재 진행 중인 화해 노력 및 비무장지대 생태계 현황 보도

4. 신청서 접수 일시.

2014년 1월 1일 12시 00분

서식 3-7. 언론사 비무장지대 출입신청서 견본

(1) 산불의 중심 좌표 및 길이와 폭(비무장지대나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산불의 위치를 적절히 명시).

(2) 군사분계선, 남방한계선 및 가장 가까운 한국군 GP/OP까지의 거리

(3) 산불 진행 방향 및 대략적인 속도.

(4) 현재 기상 상황.

(5) 풍향 및 풍속.

(6) 현재 취하고 있는 진화 조치.

(7) 산불로 인해 임박한 위험에 처한 인원이나 시설 유무.

c. 유엔사군정위 비서처는 각 신청서별로 다음 고려사항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 헬기 투입에 따른 위험성과 필요성을 비교, 검토한다. 비무장지대 내 소방 자산 투입 신청서는 다음 기준에 답해야 한다.

(1) 산불

(a) 산불의 위치가 군사분계선 이남인가? 이북인가?

(b)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c) 비무장지대 내 인원이나 주요 기반시설에 위협이 되는가?

(d) 지상 소방장비로 산불에 접근 가능한가?

(e) 산불의 확산 속도와 진행 방향은?

(f) 산불이 비무장지대 밖으로 확산되어 민간 자산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가?

(2) 기상

(a) 헬기를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기상인가(바람, 시정, 강수)?

(b) 현재 풍향 및 향후 12/24/48시간 예상 풍향은?

(c) 향후 12/24시간 이내 강수 예보가 있는가?

(3) 북한군 활동

(a) 산불로 인해 현지 북한군 활동 관측이 제한되는가?

(b) 북한군 활동 관련 경계상황 분석 결과 비무장지대 내 안전한 헬기 운용이 가능한가?

(4) 잔여 일광 시간: 유엔사 작참부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헬기는 주간(일출~일몰)에만 운용함.

d. 소방 헬기 투입이 승인되면 유엔사군정위 비서처는 군정위 본부구역에서 산불의 군사분계선 표식물로부터의 거리와 방향, 투입될 소방 자산의 종류와 수, 헬기 투입 시간 등을 북한군에 통보한다. 대북 통보가 완료되면 북한군의 수신 확인을 기다릴 필요 없이 소방 자산의 비무장지대 투입이 승인/실행될 수 있다. 유엔사군정위 비서처는 군정위 본부구역에서 대북 통보를 완료한 후 이를 서울 지휘소에 통보한다.

e. 유엔사군정위 비서처로부터 소방 헬기 운용을 승인 받으면, 신청 부대는 다음 위험 완화

절차를 실행하여 위험을 줄이고 정전협정을 준수한다.

- (1) 의도에 대한 오해나 불확실성이 없도록 반드시 대북 통보가 완료된 후 헬기를 투입한다.
- (2) 소방 헬기 작전이 민간 구제 활동이며 위협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민간 헬기만 운용한다. 민간 헬기 호송을 위한 모든 군 항공기는 비무장지대 밖에 위치한다.
- (3) 우발적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모든 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0미터 이남까지만 운용한다.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0미터 안쪽으로 항공기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유엔사 작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헬기는 주간에만 운용하며 일몰 전에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한다. 비무장지대 내에서 야간에 헬기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유엔군 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 소방 헬기 운용에 앞서 현지부대가 책임지역 내에서 헬기 운용이 민사 구제 활동임을 강조하는 경고 방송을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f. 소방 헬기의 비무장지대 투입이 승인되면, 한국군 부대는 헬기 운용이 종료될 때까지 산불 및 헬기 운용 현황을 매일 오전과 오후 한국군 군정위 연락단에 제출한다.

3-9. 유엔사 비무장지대 민정경찰

유엔사 비무장지대 민정경찰은:

- a. 유엔사군정위와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인원, 중감위 인원, 대성동 주민 및 유엔사군정위 비서처가 유엔사 측 비무장지대 출입을 인가한 기타 인원들을 보호한다.
- b. 신원 미상의 인원 혹은 작전이나 경비에 위협이 되는 인원들을 체포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기관에 인계한다. 또한 비무장지대 민정경찰은 본인 및 기타 인원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인원들을 체포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당국에 인계한다.
- c. 비무장지대 민정경찰은 유엔사군정위 비서처가 인가한 인원들만 비무장지대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며, 비무장지대는 GOP 철책의 위치와 관계없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 킬로미터까지의 지역을 의미한다. 군정위 본부구역 “갑”구의 출입은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이 통제한다. 대성동 출입과 관련된 정보는 유엔사 규정 525-2 대성동 민사행정을 참조한다.
- d. 남방한계선 표지판, 비무장지대 안전 소로 및 한강하구 남방 경계 표식물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시에 따라 유엔사 책임하에 있는 군사분계선 표식물들을 점검한다. 유지, 보수 작업이 필요한 경우 건의안을 제출한다.
- e. 비무장지대 상공과 안에서의 모든 아군 및 적군의 활동을 감시하고, 정전협정의 위반사항이나 정전 유지와 관련된 작전 정보를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에 보고한다(유엔사/연합사 예규).
- f. 정전협정 위반으로 의심되는 모든 사항들을 기록하고 보고하며, 적절한 경우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원의 신병을 확보하고, 필요 시 이들을 해당 당국에 인계한다. 또한 정전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아군 혹은 적군의 모든 관련 작전 정보를 보고한다.

g. 유엔사의 비무장지대 민정경찰 및 장비, 그리고 비무장지대에 진입하는 모든 인원과 장비가 적절하게 식별되도록 한다(제10장).

3-10. 비무장지대 반입 인가 화기

유엔사/연합사 본부 규정 525-4 '유엔사/연합사 정전교전규칙'을 참조한다.

a. 유엔사의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민정경찰은 필요 시에만, 그리고 유엔사/연합사 규정 525-4에 따라 무기를 사용한다.

b.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에 배치한 무기 체계에 대응해, 유엔군 사령관은 2014년 11월 26일자 유엔군 사령관 각서 '비무장지대 내 인가된 한국 정전협정 예외사항' 수신: 한국 합동참모의장에 의거하여, 아래 명시된 무기 체계의 비무장지대 배치를 인가했다.

(1) 개인화기(반자동 및 자동, K1, K2, K3).

(2) 중(中) 기관총(7.62mm).

(3) 중(重) 기관총(K6 .50 구경 및 K4 40mm 자동 유탄발사기).

(4) 무반동총(최대 57mm).

(5) 60mm 및 81mm 박격포.

(6) 유선 조종식 크레모아 지뢰.

(7) 수류탄.

c. 전자방해책 등 모든 그 밖의 무기 체계나 비인가 장소에 배치된 인가·비인가 모의 화기, 또는 보병대대에 편제되지 않은 군사 장비의 경우 유엔군 사령관의 별도 인가를 얻기 전까지는 비무장지대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 인가되어 있지 않은 무기를 비무장지대에 반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엔사군정위 비서처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신청서는 위협 및 작전상 필요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비무장지대 내 모든 무기 반입에 대한 승인 권한은 유엔군 사령관에게 있다.

d. 유엔사의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민정경찰로 보직된 인원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시, 지휘관은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내에서의 모든 화기 사용에는 신중한 판단과 평가 그리고 정전교전규칙 준수가 요구됨을 강조한다.

3-11. 비무장지대 내 확성기 방송

참조: 본 규정 제3-11항에 명시된 확성기 방송 지침은 유엔군 사령관이 비무장지대 내부 및 인근에 확성기 설치를 재승인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a. 남측 비무장지대 내에 식별된 확성기는 없다. 상기 언급된 바에 따라, 확성기를 재반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엔군 사령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018년 대한민국 정부는 남측 비무장지대 내에 설치되어 있던 확성기를 전부 철거하였다. 과거 2017년도에 유엔군 사령관은 비무장지대 내부

및 인근의 52개소에 한해 대북 심리전용 확성기의 제한적 설치를 허용하는 지침을 하달한 바 있다. 승인된 52개소 중 24개소(고정식 14개소, 이동식 10개소)는 비무장지대 내에 위치해 있다(2017년 2월 자서한 ‘비무장지대 대북 방송용 확성기 승인’ 수신: 한국 합참). 당시 이러한 심리전 확성기의 설치 및 운용은 특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영구적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었다. 또한 확성기의 설치, 운용 및 유지는 정전협정 및 기타 적용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뤄지도록 하였다.

b. 본 규정 제3-5항(비무장지대 내 공사)에 따라, 기존 기반시설이나 장비 수리 혹은 교체 장비의 설치는 우선 유엔사군정위 비서처를 경유해 협조한 후 유엔군 사령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비무장지대 내 확성기의 설치, 운용 및 유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과거에 비무장지대 내에 확성기가 설치되었던 장소를 교체, 보완, 수리 또는 운용 재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유엔사군정위 비서처를 경유해 신청서를 제출하여 유엔군 사령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유엔사군정위 비서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해 정전협정, 후속합의서 및 현행 방침 준수 여부를 확인한 후 유엔군 사령관의 최종 승인을 건의한다.

(2) 재승인을 받더라도, 심리전 확성기는 GP 안에 설치할 수 없다. 유엔사 GP에 설치된 방송 장비는 선전 또는 심리전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북한의 대남 선전 방송이 실시되는 동시간에 대응 방송을 실시하는 것만 유엔군 사령관의 승인하에 가능하다. 그 외에는 경고 및 신원 확인을 위한 방송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3) 재승인을 받더라도, 확성기는 안보견학장과 함께 위치해서는 안 된다. 비무장지대 내 안보견학장에서의 확성기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유엔사 규정 551-6의 제3-1장 c항을 참조한다.

3-12. 친교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 모든 인원들은 직책을 막론하고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의 별도 허가가 있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군/중국인민지원군 측 인원들과 친교를 나누거나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

3-13. 훈련

지휘관들은 유엔사의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민정경찰로 보직되는 모든 인원들을 신중히 선발하고, 이들이 적절한 훈련을 받아 상기 명시된 민감한 업무들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발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군사훈련(부대 돌격 연습 혹은 진지 점령 훈련 등)은 비무장지대 내에서 인가되지 않는다. 유엔군 사령관이 명확하게 인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무장지대 내에서 실탄이나 공포탄 사격 훈련은 허가되지 않는다.

3-14.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내에서의 사진 촬영

- a.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내에서 공적인 사진 촬영은 허가된다.
- b.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내에서 사적인 사진 촬영은 허가되지 않으나, 다음은 예외로 한다:
 - (1) 브리핑 중 안내된 혹은 게시된 설명에 따른 판문점 내 사진 촬영.
 - (2) 인가된 안보견학장에서 현지 사단장 혹은 그 대리인이 승인한 사진 촬영.

(3)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이 사적인 사진 촬영을 인가한 곳에서 사진 촬영.

3-15. 한강하구 내 민간 선박 항행 및 민정경찰에 관한 제반 규칙

a. 정전협정은 정전협정의 공식 지도상에 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한강하구의 비무장화를 규정하고 있다. 한강하구 수역과 각방 군사통제 지역 간의 경계선은 만조 시 수제선으로 한다. 한강하구에는 군사분계선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정전협정은 특정 규칙하에서 쌍방의 민간 선박 항행을 위해 한강하구 수역을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 한강하구에서의 민간 선박 항행에 적용되는 관련 규칙은 정전협정 후속합의서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1) 한국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하여 온 한강하구 수역 내에 성문화되지 않은 항행 규칙과 관습은 정전협정 규정과 그 안에 포함된 규칙에 저촉되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쌍방 선박이 이를 존중한다.

(2)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의 허가와 북한군 측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는 군사인원, 무기 및 탄약을 실은 군용, 민용 선박과 중립국 선박은 남측으로부터 한강하구 수역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3)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의 허가와 북한군 측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는 한강하구 수역 내에 부표, 부유물, 등광, 표판, 깃발 또는 기타 항행 보조물 혹은 표식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4) 쌍방 사령관은 정전협정 및 정전협정 후속합의서에 따라 자기 측의 선박 등록에 적용할 규칙을 규정할 책임이 있다. 등록된 모든 선박에 관한 보고는 기록 유지를 위해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에게 제출한다.

(5) 한강하구 수역 내의 매개 선박과 수상에서 항행하는 교통기재는 하기 규정을 준수하며 복종한다.

(a) 매개 선박은 선박의 형, 길이와 톤수, 선박의 국적, 선주의 성명 및 국적과 선박 등록 항구를 명기한 등록증을 휴대한다.

(b) 매개 선박은 조사받을 때 하기의 자료를 제공한다:

- 등록 국가.
- 선주의 성명 및 국적.
- 선박 등록 항구.
- 출발항.
- 목적항.
- 선장, 선원 및 승객의 성명.

- 적재 화물의 종류와 수량.

(c) 매개 선박은 특별조사반,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및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민정경찰 인원의 조사, 수색 및 심문에 따른다.

(d) 매개 선박은 언제나 자국 국기 혹은 국적을 표시하는 깃발을 뚜렷하게 단다.

(e) 민용 선박은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군사장비도 신지 못한다.

(f) 일방의 선박은 타방의 통제 수역과 강안에 들어가지 못하며 한강하구 수역 내 타방의 경계선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 구역에는 접근하지 못한다. 이 규정은 적대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오판의 가능성 줄이고자 양측에 완충지대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g) 일방의 선박은 상대방의 선박과 연락이나 통신을 해서는 안된다. 충돌을 피하기 위한 항행 신호를 하는 것은 허가된다.

(h) 하기 8 항에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방의 선박은 상대방의 선박이나 인원과 화물, 장비 혹은 승객을 양도하거나 교환하지 못한다.

(i) 어떠한 선박이든지 야간에는 항행이나 활동을 하지 못하며 일몰 30 분 후부터 일출30분 전까지의 기간에는 자기 측 강안 부근에 정박한다.

(6) 일방의 인원은 타방의 통제 수역이나 강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7) 일방의 인원은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의 허가 없이는 타방의 인원 및 선박과 연락이나 통신을 하지 못한다.

(8) 한강하구 수역 내에서 항행하는 선박이 폭풍이나 조류의 영향 혹은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재난을 당하였을 때 그 선박과 인원이 어느 측에 속하였든지를 막론하고 쌍방은 모두 이를 구제할 책임을 진다. 구제한 후의 처리는 해당 사건의 조사를 맡은 특별조사반이 이를 책임진다.

(9) 한강하구 수역 내에서 발생한 선박의 충돌 사건이 일방의 선박과 인원에만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측 법률에 의거하여 해결한다. 이러한 충돌로 인해 상대방의 선박이 파손되고/되거나 인원이 상해를 입은 경우, 특별조사반이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유엔사군정위에 보고하고 합의된 조치를 취한다.

c. 정전협정 후속합의서 “A”는 각방 사령관이 후속합의서 “A” 및 정전협정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강하구 내에 민정경찰을 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유엔군 사령관은 한강하구 민정경찰 작전의 승인권자이다. 한강하구 민정경찰은 정전협정 및 후속합의서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무력 사용 및 상황 완화에 대한 규정인 정전교전규칙 및 무력사용수칙을 따른다.

3-16. 비무장지대 상공 통제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규정 95-3에 의거하여 남측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 상공에 대한 통제 권한은 유엔사에 있다. 그 어떠한 항공기나 무인기, 기타 비행체도 유엔군 사령관의 별도 허가 없이는

비무장지대에 진입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신청서는 반드시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에 제출해 검토를 받아야 하며, 신청서에는 위협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작전적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17. 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경고

a. GOP 철책 일대에 주둔하고 있는 전방 부대들과 한강하구의 남쪽 제방 일대에 위치한 OP 들은 남쪽으로부터 접근하는 항공기들이 비무장지대/한강하구 안으로 우발적으로 진입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대공 감시를 담당할 초소를 지정한다. 각 초소는 다음과 같은 경고 신호용 기구들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한다:

- (1) 적색 및/혹은 백색 오성 신호탄, 그리고/혹은 적색 및/혹은 백색 낙하 조명탄.
- (2) 적색 지상 연막탄.
- (3) 접근 시 구두 경고를 위한 공용 주파수/조명 신호 장비 .

b. 다음 정보를 각 GP/OP 에 잘 보이도록 게시한다:

(1) 대공 초소 근무자들은 항공기가 비무장지대/한강하구 상공을 침범할 것처럼 비행한다고 판단되면 상기 열거된 경고용 장비를 사용하도록 교육을 받는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적색/백색 오성 신호탄과 적색/백색 낙하 조명탄을 먼저 발사하고, 뒤이어 적색 지상 연막탄을 사용한다. 이 같은 신호탄들은 비무장지대/한강하구의 남방한계선과 평행하게 또는 그 보다 남쪽으로 발사해 군사분계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

(2) 남쪽으로부터 접근하는 항공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설령 그 항공기가 비무장지대를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할지라도 탄약이나 신호탄을 항공기를 향해 직접 발사해서는 안 된다. 접근하는 항공기에 사격해서는 안 된다!

c. 북쪽으로부터 접근하는 항공기가 관측된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적대행위를 하거나 적대의도를 보이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정전교전규칙에 따라 적절하게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

제 4 장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 (군정위 본부구역)

4-1. 개요

a. 유엔사 측 군정위 본부구역의 일차적인 목적은 유엔군 사령관이 북한군 및 기타 북한 기관들과 대화와 협상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다. 유엔군 사령관은 이러한 대화/협상을 관리하는 과업을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에게 부여하였다. 유엔군 사령관은 유엔사 측 군정위 본부구역 출입이 허가된 모든 인원들을 경호하고 보호하는 과업을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에게 부여하였다.

b. 군정위 본부구역 출입에 대한 권한 및 통제는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에게 단독으로 위임된 사항으로,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은 작전을 중지하거나 변경할 때 반드시 사전에 유엔사군정위 비서장과 협의해야 한다. 단, 유엔사 측 군정위 본부구역 안에서의 인명 보호 및 경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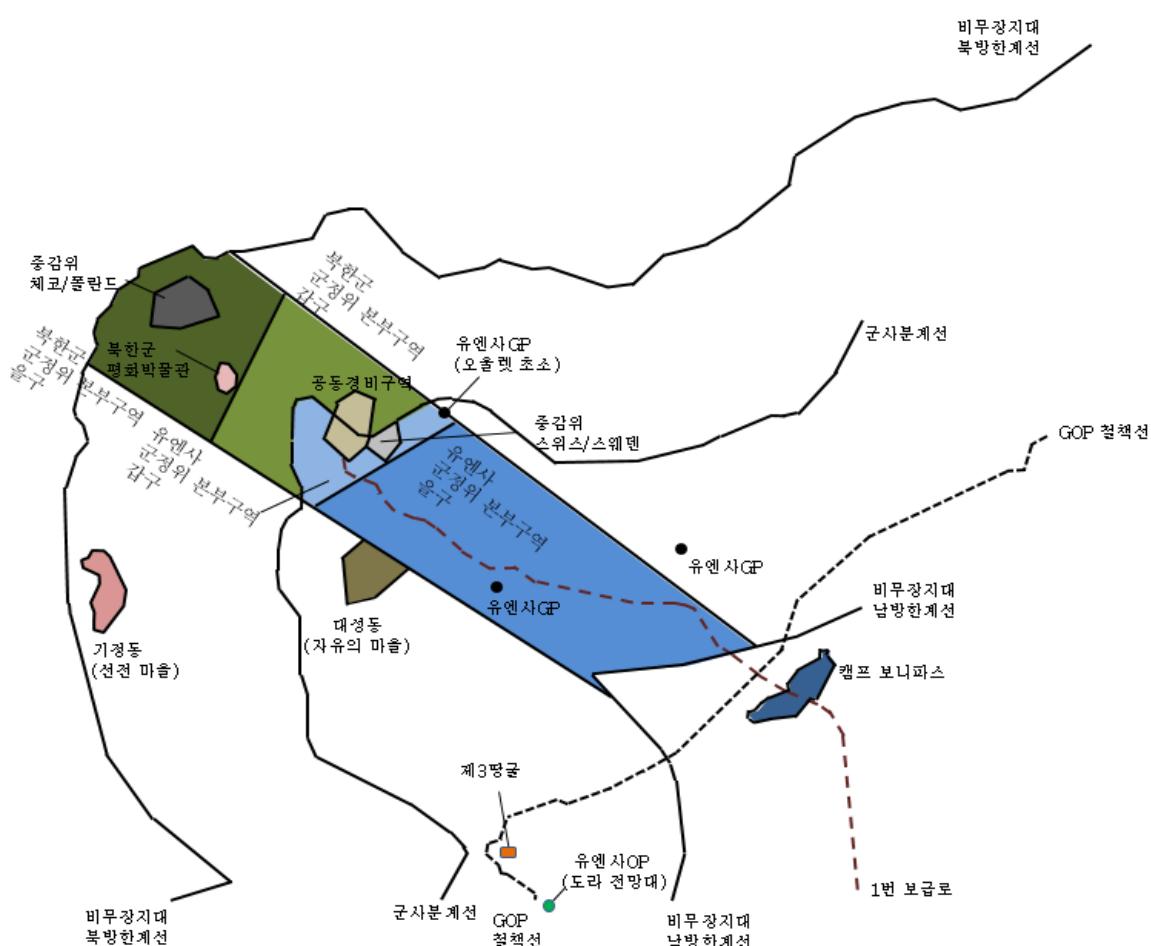
유지에 필요한 전술적 결정을 급박하게 내려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c. 유엔사 측 군정위 본부구역 및 판문점에 들어가는 인원들은 항상 출입증을 소지하고 적절한 식별 표시를 착용해야 한다(제 10 장).

d.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이 공식적으로 인가한 접촉(예: 통지문, 회담, 전화 통화, 팩스 교신)을 제외한 북한군/중국인민지원군 측 인원 혹은 군사분계선 이북에 있는 인원과의 소통은 금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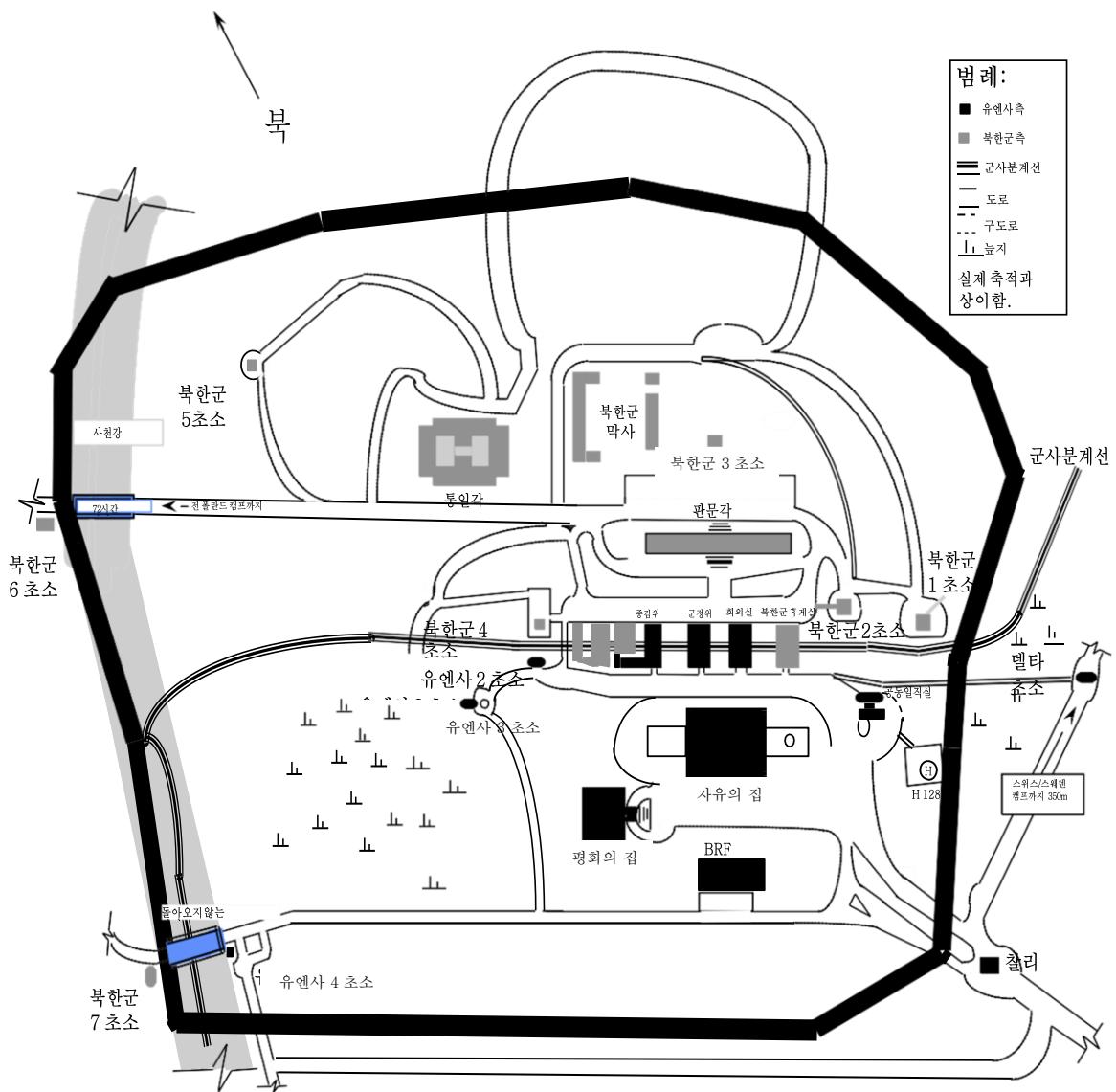
4-2. 배경

a. 군정위 본부구역은 군정위를 위한 사무실과 회담장 구역을 제공한다. 군정위 본부구역은 판문점을 중심으로 군사분계선 이북과 이남의 양측 비무장지대 내에 위치하고 있다. 군정위 본부구역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각각 “갑”구와 “을”구로 분할되어 있다. 회담장 구역은 “갑”구에 위치한 직경 약 800 미터의 원형 지역이다. 이 원의 중심은 회담장 구역 정중앙에 위치해 있다. 회담장 구역은 콘크리트 턱과 백색 말뚝으로 명확히 표시된 군사분계선에 의해 분할되어 있다. 중감위 스웨덴/스위스 대표단 숙영지는 유엔사 측 군정위 본부구역 “갑”구 내에 위치하고 있다. 중감위 체코슬로바키아/폴란드 대표단 숙영지는 과거 북한군/중국인민지원군 측 군정위 본부구역 “을”구 내에 위치했었다(서식 4-1).



서식 4-1.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군정위 본부구역)

b. 정전협정 및 정전협정 후속합의서에 따라 쌍방은 회담장 구역 내에 군정위와 중감위가 사용할 건물을 건축하였다(서식 4-2).



서식 4-2.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군정위 본부구역) - 판문점

c. 유엔사 측 군정위는 판문점 유엔사 측 지역에 헬기 착륙장(H-128) 1 개소를 유지한다.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는 H-128 헬기 착륙장 이용 협조를 지원한다. H-128 헬기 착륙장으로의 비행 인가는 유엔사군정위 비서처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규정 95-3 '한국 전술지역 P-518 비행 절차').

d. 판문점 및 군정위 본부구역의 “갑”구에 대한 경비 책임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북한군 측 경비병력과 유엔사 측 경비병력 간에 분리되어 있다. 유엔사 측 군정위 본부구역 “을”구 내에서

유엔군 사령관의 정전협정 이행에 대한 경비 및 지원 책임은 한국군 1사단장에게 부여되어 있다. 필요시, 요청에 의거 1사단은 유엔사 측 군정위 본부구역의 “갑”구 내에서 작전 지원도 제공한다.

(1) 정전협정에 따라 군정위 본부구역의 경비를 제공하는 인원은 양측 각각 무장 장교 10명과 무장 사병 90명(부사관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2) 판문점 경비 인원은 어떤 경우에도 무장 장교 5명과 무장 사병 30명(부사관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경비 인원이 휴대하는 무기는 개인당 비자동소총 1정 혹은 비자동권총 1정으로 제한한다.

e. 유엔군 사령관이나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이 승인하지 않는 한 군인, 기자단 및 경비 인원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군사분계선 월선은 쌍방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어느 일방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지정된 건물 내부에서 허가된다. 유엔사가 후원하는 방문객들은 북한군이 단독으로 통제하는 지역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어느 일방의 차량이 판문점 내에서 군사분계선을 월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f. 극히 제한적인 예외로서, 이 지역에 거주하는 것은 한국 민간인 중 정전협정에 따라 대성동 거주 자격을 지닌 이들에게만 허가된다(세부사항은 유엔사 규정 525-2에 명시).

4-3. 책임

a.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은:

(1) 정전협정, 정전협정 후속합의서 및 군정위 본부구역과 관련된 모든 적용 가능한 유엔사 규정의 시행을 감독하고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2) 회의와 통지문을 포함한 북한군과의 통신을 24 시간 유지하며, 모든 비서장 및 참모장교 회의와 통지문 전달을 실시, 인가 및 지시한다.

(a)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전방 본부에 위치한 공동일직실에 지속적으로 인원을 배치한다.

(b) 군정위 본부구역 내의 일상적 작전을 감독하기 위한 공동일직장교를 배치한다.

(3) 유엔사군정위/북한군 간 협상을 위해 행정 지원을 제공한다.

(4) 중감위 캠프에 행정 지원을 제공한다.

(5) 중감위 캠프의 행정에 관한 계획, 방침 및 소요를 감독하고 규정하며 작성한다.

(6) 모든 군정위 본부구역 출입 및 군사분계선 통과를 정전협정 및 본 규정에 의거하여 승인한다.

(7) 유엔군 사령관의 군정위 본부구역 안보건학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8) 군정위 본부구역 내에서 다음과 같은 참모 감독을 제공한다.

(a) 대성동 작전지역 관련 유엔사 규정, 계획 및 방침에 대해 유엔사 경비대대에 통지한다.

(b) 상기 규정, 계획 및 방침을 해석하고, 유엔사 경비대대가 이를 이행하는 것을 지원한다.

(c) 유엔사 경비대대의 이행 조치를 확인해 그 준수 정도를 평가한다.

(d) 유엔사 경비대대의 준수 및 이행 수준에 대해 유엔사군정위 수석대표와 유엔사 참모장을 경유해 유엔군 사령관에게 보고한다.

(9) 유엔사 규정 525-2에 명시된 대성동 작전지역에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과 기타 대성동 관련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 방침 및 소요를 감독하고, 규정하며, 작성한다.

(10) 군정위 본부구역 내 비행장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유엔군 사령관의 정전협정상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H-128 헬기장으로 항공기를 운항하는 월간 권한 확인 비행을 계획하고 협조하며 실시한다.

b.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공동일직장교는:

(1)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통지문 전달 및 회의 개최를 비롯한 북한군과의 직접적인 통신에 대비한다(정전협정 후속합의서 “M”).

(2) 군정위 본부구역 및 대성동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 활동을 다음과 같이 감독 및 확인한다.

(a) 민사 및 행정 목적으로 군정위 본부구역 및 대성동을 정기적으로 출입해야 하는 다양한 기관들의 출입을 허가한다.

(b) 군정위 본부구역 및 그 인접 지역 내에서 모든 당사자들의 정전협정 준수를 확인 및 보고한다.

(c) 모든 일상적 사안에 대해 대한적십자사,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대성동 및 중감위와 교류하고 연락한다.

(d) 필요시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의 중감위 연락장교와 협조한다.

(3)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과 연락해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의 임무 및 여러 기관들의 판문점/공동경비구역/군정위 본부구역 출입과 관련된 다양한 경비 소요를 파악한다.

(4) 유엔사군정위 본부구역 내에서 유엔사 안보견학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5) 유엔사를 대표하여 귀빈 및 내빈 견학을 안내한다.

(6) 공동경비구역에서의 남북한 간 유해 송환을 위한 계획, 협조 및 감독을 지원한다.

c.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은:

(1) 유엔사 측 군정위 본부구역 “갑”구 내에 위치한 모든 시설물에 대한 경비를 비롯해 판문점 내의 모든 유엔사군정위 인원, 유엔사 측 공식 방문객, 중감위 인원, 그리고 유엔사군정위 비서처가 판문점과 유엔사 측 군정위 본부구역 “갑”구 출입을 인가한 인원의 안전, 보호 및 이동의 편의를 정전교전규칙에 의거해 보장한다.

(2) 모든 군정위 본부구역 안보견학에 대해 경비와 안전을 제공한다.

(3) 유엔사 측 군정위 본부구역 “갑”구 및 대성동 영농지역을 포함하는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작전지역 내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유지 및 관리)에 대한 경비를 제공하고,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한다.

(4) 유엔사 규정 525-2에 따라 대성동 지역의 민사 구제/경비 방침들을 이행한다.

(5) 비상 상황 및 후송 시 유엔사 인원, 중감위 인원 및 대성동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우발계획을 준비하고 발표한다.

(6) 유엔사군정위 비서처가 실시하는 판문점 내 H-128 권한 확인 비행 및 사전 지상 답사를 지원한다(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규정 95-3).

(7) 한국군 1 사단과 협조하여 유엔사군정위 비서처가 인가한 인원들만 군정위 본부구역 출입이 허용되도록 한다(2003년 8월 한국 육군 1 사단과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간 체결된 합의각서).

(8) 정전 유지 노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전 정보를 포함하여 유엔사 측 군정위 본부구역 “갑”구 및 “을”구와 이에 인접한 지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정전협정 위반 의심 사건을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및 유엔사/연합사 서울지휘소에 즉각 보고한다(제 7 장).

(9) 판문점의 유엔사 측 방문객들을 안내하고 보호하며, 방문객들이 북한군 측 인원들(군인 혹은 민간인)과 어떠한 형태로도 친교를 나누거나 소통하지 않도록 한다.

(10) 화기 사용 시, 유엔사/연합사 규정 525-4 ‘유엔사/연합사 정전교전규칙’에 명시된 바를 준수한다.

(11) 유엔사군정위의 통지문 전달, 유엔사군정위와 북한군 간 회담, 남북 회담, 6자 회담 및 송환과 같이 남측과 북측 간 접촉이 수반되는 활동을 지원한다. 남측과 북측 간 접촉과 관련된 업무는 안보견학 업무에 우선한다.

(12)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는 캠프 보니파스 알파 초소 앞에서 인원 및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한다. 남북 회담이나 공동 행사에 참가하는 한국 공식 대표단은 검문검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필요시 군견을 활용하여 차량 검색을 실시한다.

(13) 제대로 작동하는 실질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 연락사무소,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및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간 회의를 정기적으로 혹은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 주요 행사 관련 협조는 사전 준비 회의를 통해 실시한다.

d. 한국군 1 사단장은:

(1)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의 통제하에 있는 지역을 제외한 유엔사 측 군정위 본부구역 “을”구 내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유지 및 통제)에 대한 경비를 제공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이행한다.

(2) 대성동 영농지역에 대한 경비는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과 협조한다.

e. 한국 정부의 남북 연락사무소는:

(1) 본 규정에 따라 군정위 본부구역 출입 신청서를 제출한다.

(a) 모든 신청서는 팩스, 이메일 혹은 서면으로 공동일직실을 경유해 제출한다. 신청서는 반드시 근무일 기준 최소 3 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 이후에 제출되는 긴급 신청서는 각 사안별로 고려된다. 신청서에는 출입 일시, 출입 목적, 차량 정보(차종, 차량 번호)를 포함한다.

(b) 방문객 명단에는 소속 기관, 직책 및 주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방문객이 한국이나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국민일 경우, 공동일직실에서 여권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승인에 앞서, 모든 신청서에 대해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및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의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c) 남북 연락사무소에 보직된 공무원들은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판문점 지역에서 상시 근무하는 인원들이므로 군정위 본부구역 출입에 있어 특별 고려 대상이다.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은 이들이 비무장지대 출입증을 패용함으로써 판문점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남북 연락사무소에 신규 보직된 공무원들의 경우, 비무장지대 출입증이 발급될 때까지 남북연락소장(적십자 전방사무소장) 명의로 유엔사에 제출된 비무장지대 출입증 발급 신청서 사본을 임시 출입증으로 인정한다.

(d) 남북 연락사무소의 인원들은 한국 정부 관용차량을 등록해 판문점 출입 시 사용할 수 있다.

(e) 남북 연락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차량이 판문점을 출입할 시에는 한국 정부의 상징이 그려진 깃발을 달도록 한다. 다른 모든 차량들은 본 규정에 의거하여 황색 혹은 청색 깃발을 달도록 한다.

(f) 모든 남북 연락사무소 인원들은 비무장지대 출입증을 항상 휴대한다. 이 출입증은 매년 갱신되어야 한다. 출입증 관련 신청서는 공동일직실을 경유해 제출한다. 모든 남북 연락사무소 인원들은 육안으로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고유의 핀(태극기와 적십자 마크)을 옷깃에 착용하도록 한다.

(g) 판문점 내의 모든 인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가되지 않은 행동(무단 사진 촬영, 이동간 무단 정차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시설 관리 목적의 차량과 인원은 안내경호 병력을 동반할 시 1 번 주보급로에서의 정차가 허용된다. 유엔사 브라보 초소(캠프 보니파스)와 유엔사 찰리 초소(판문점) 사이의 구간에서는 사진 촬영이 허가되지 않는다.

(2) 다음과 같은 경우 남북 연락사무소는 출입 목적을 유선으로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공동일직실에 즉시 알리도록 한다(추후 서면 신청서 제출).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인원과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는 남북 연락사무소 인원이 안내하는 아래의 항목에 기재된 인원이 즉시 출입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a) 응급 환자, 통신망 두절, 필수 정비, 전기 사고 및 화재 등의 비상 상황에 필요한 인원, 장비 및 차량.

(b) 남북 회담, 공동 행사 및 민간인 송환 등의 공식 업무를 위해 판문점 지역을 출입하는 한국 공무원 및 남북 연락업무 관련 기관의 인원 및 차량.

(c) 기타 남북 연락업무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인원, 장비 및 차량.

(3) 남북 연락사무소의 판문점 귀빈 방문 신청: 모든 판문점 견학신청은 유엔사 규정 551-5 '군정위 본부구역 안보견학 프로그램'에 의거해 실시된다.

(a) 일정상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견학 휴무일에는 방문을 계획하지 않는다. 공동일직실은 견학 휴무일 목록(분기별)이 발간되거나 최신화되면 이를 전달하도록 한다.

(b) 한국 정부의 대표로서 남북 연락사무소는 남북 연락사무소가 위치해 있는 자유의 집과 남북 회담이 열리는 평화의 집 방문을 준비할 수 있다. 이러한 방문은 유엔사 일반 견학과는 별도로 귀빈 방문의 형태로 실시될 수 있지만, 다른 견학과 마찬가지로 유엔사군정위 비서처를 통해 견학 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문은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및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의 지원 가능 여부가 확인된 후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군정위 본부구역 견학 일정 수립에 관한 추가 지침은 유엔사 규정 551-5를 참조한다.

(c) 남북연락소장(적십자 전방사무소장)은 한국의 입법, 사법, 행정 기관 소속 인원(차관급 이상 및 기타 유관 기관의 동급 인사)이 군정위 본부구역을 방문하는 경우, 유엔사군정위 비서장과 협조한다. 유엔사군정위 비서처는 출입, 경호, 의전 문제와 관련해 적극 협조한다.

(4) 남북 회담, 행사 및 송환 활동/지원:

(a) 남북 연락사무소는 군정위 본부구역 내에서의 남북 회담 및 공동 행사에 참가하는 대표단, 취재진 및 지원 인력(식사 제공 인력 포함)들의 판문점 출입을 운영하고 지원하는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남북 연락사무소는 이 지역을 출입하는 인원, 장비 및 차량과 같이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의 경계작전에 필요한 정보를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에 신속히 제공한다.

(b) 남북 연락사무소는 회담, 행사 및 송환을 위한 정확한 군사분계선 통과 시간 정보를 입수하는 즉시 제공한다. 유엔사 공동일직장교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적십자와, 군인에 대해서는 북한군과 통과 시간을 협조하고 확정한다.

(c) 남북 회담 및 공동 행사를 위해 군정위 본부구역으로 전달되는 모든 행낭은 '외교 행낭'으로 표시하여 최대한 신속히 처리되도록 한다.

(5) 군정위 본부구역 내 남북 연락사무소 인원 및 방문객들의 행동: 모든 남북 연락사무소 인원 및 방문객들은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및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인원의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a) 공무상 평화의 집, 자유의 집, 공동일직실 건물 사이를 이동하는 것은 허가된다.

(b) 군정위 본부구역 "갑"구에서는 큰 소리로 이야기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뛰어다니는 행위가 허가되지 않는다. 모든 휴식은 신속하고 조용하게 취하도록 한다. 흡연구역은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에서 지정한다. 회담장 구역이나 T-1, T-2, T-3를 포함한 모든

유엔사 건물 내에서는 흡연이 허가되지 않는다.

(6) 남북 연락사무소의 중감위 회의실(T-1) 사용: 제 2 차 남북 적십자 예비 회담(1971. 9. 29.)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남북 연락사무소는 회의 시작 30 분 전까지 유엔사 공동일직실에 유선으로 통보함으로써 중감위 회의실을 공식적인 남북 연락 회의 장소로 사용할 수 있다. 중감위의 사전 동의하에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인원은 사용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이러한 요청을 승인하고 회의실 문을 개방한다.

제 5 장 남북관리구역

5-1. 개요

남북 관리 구역은 북한과 한국 간 화물 및 인원 수송을 목적으로 양측을 도로 및 철도로 연결한 비무장지대 내의 특수 구역이다.

5-2. 배경

a. 2000년, 유엔사와 북한군은 비무장지대 내 최초의 남북관리구역을 설치하는 정전협정 후속합의서에 서명하였다. 현재는 비무장지대 동해지구와 비무장지대 서해지구에 각각 하나씩, 총 두 곳의 남북관리구역이 있다. 이러한 남북관리구역 설치 이후,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인원과 물자 이동이 이 구역을 통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b. 동해지구 남북관리구역과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은 비무장지대를 관통하며, 이에 따라 정전협정 제반 조항이 적용된다. 동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의 경비는 한국군 22사단이 제공하며,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의 경비는 한국군 1사단이 제공한다.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모두, 현장에서의 정전 사안 관련 권한은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이 임명한 대리인인 관리구역 통제장교들에게 위임되었다. 관리구역 통제장교들의 최우선 목표는 비무장지대 내에서 정전협정이 준수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관리구역 내부 및 그 주변 지역에서의 통행과 활동을 감독한다 (참조: 2000년 11월 17일 자, 2002년 9월 12일 자, 2002년 9월 17일 자, 2003년 1월 20일 자 정전협정 후속합의서들에 명시된 “군사적인 문제” 관련 한국 국방부-유엔사 간 약정).

5-3. 남북관리구역 통제반

각 남북관리구역에는 남북관리구역 통제반이 편성되었고, 이들은 각 구역에서 유엔사를 대표한다. 각 관리구역 통제반은 관리구역 통제장교로 구성되며, 관리구역 통제장교는 관리구역 부통제장교들, 관리구역 책임부사관, 관리구역 부사관, 통역관, 운전기사를 포함하는 기타 다양한 직책의 보좌를 받는다. 이들 직책은 유엔사 회원국 인원들로 충원된다.

5-4. 남북관리구역 한국군 운영단

관리구역 통제반과 더불어, 남북관리구역 한국군 운영단은 각 관리구역에서 군 상황실을 운영한다. 한국군 운영단은 관리구역 통제반과 긴밀히 협력해 통행 신청서 및 통지문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한국군 운영단의 책임사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a. 군사분계선 통행 신청서를 통행 예정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최소 2일 전까지 관리구역 통제반에 제출한다.
- b. 직통전화를 통한 북한군과의 비정례적인 전화나 팩스 통신을 모두 관리구역 통제반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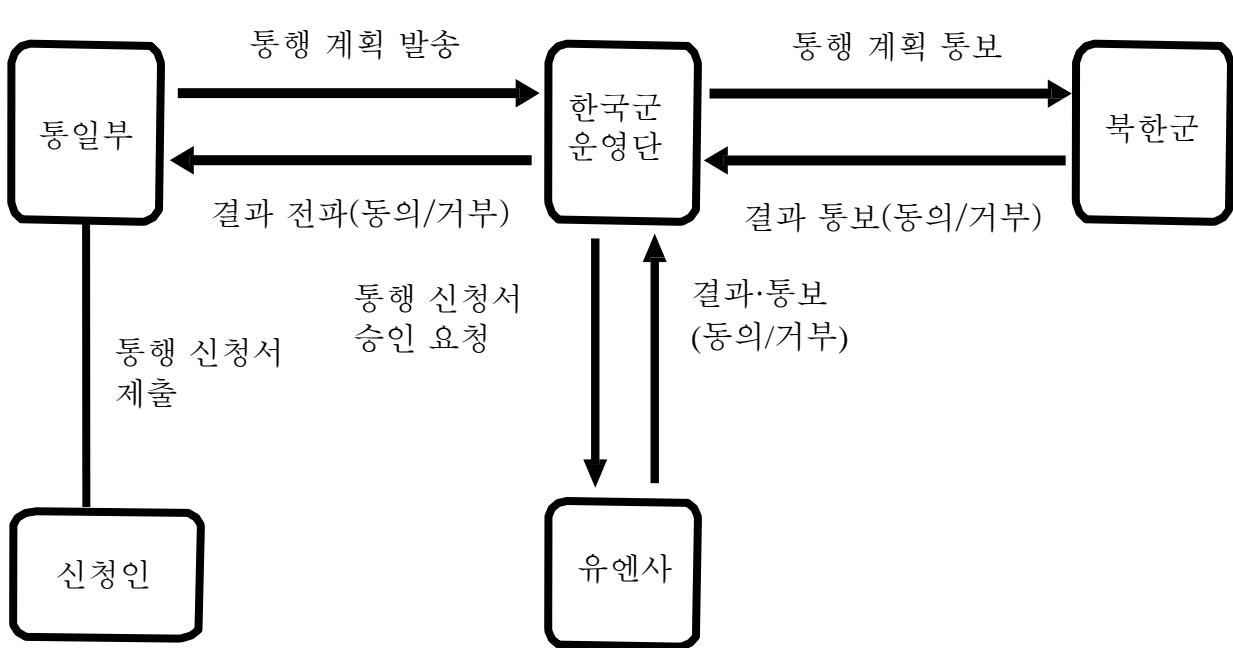
알린다.

- c. 통행 시간 변경, 군사분계선 통행 계획 변동사항 혹은 예정된 통행 일정대로 복귀하지 않은 인원 및/혹은 차량에 관한 정보를 관리구역 통제반에 통보한다.
- d. 건설공사나 특별 행사 등 남북관리구역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활동에 대해 유엔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 및 출입 신청서를 관리구역 통제반을 통해 제출한다.
- e. 근무 시간 이외에는 상기 정보를 유엔사군정위 공동일직실에 있는 당직 통역관에게 통보한다.

5-5. 남북관리구역 군사분계선 통행 신청서

- a. 군사분계선 출경 및 입경 신청서는 다수의 기관들이 처리해야 한다. 이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로서, 신청서가 한국 정부, 유엔사 그리고 북한군을 통해 완전히 처리될 때까지는 5~21 일이 소요될 수 있다. 통행 신청서는 최초 통일부에 제출된 후 관세청과 법무부 등의 한국 정부 기관들에 전달된다. 통일부가 승인한 신청서는 한국군 운영단으로 전달된다. 한국군 운영단은 신청서를 검토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확인한다. 한국군 운영단이 신청서를 검토한 후에는 유엔사 관리구역 통제반에 전달된다. 유엔사 관리구역 통제반은 한국군 운영단으로부터 반드시 통행 예정일로부터 최소 48 시간(근무일 기준 2일) 전에 통행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군사분계선 통과는 유엔사군정위에서 승인한다.
- b. 북한군 승인: 유엔사가 군사분계선 통행을 승인하면 한국군 운영단은 신청서를 북한군에 팩스로 전달한다. 신청서는 통행일로부터 24 시간 전에 보내도록 하며, 신청서 접수는 전화로 확인한다. 이후 북한군은 군사분계선 통행 신청서를 검토하고, 승인한 통행 신청서를 한국군 운영단에 팩스로 발송한다. 한국군 운영단은 매일 오전 북한군의 승인 통보 팩스의 사본 1 부를 관리구역 통제반에 제공한다. 북한군이 승인하면 신청 절차는 완료되고 통행은 예정대로 실시된다.
- c. 통행 변경 신청서: 통행이 예정대로 실시되지 않거나, 예정과 다른 시각에 실시되거나, 아예 실시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통행 변경 신청서는 통행이 실시되기 전, 예정된 통행 시각까지 최소 48 시간이 남아있는 시점에 제출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관리구역 통제반이 처리하여 승인 여부를 한국군 운영단에 적시에 통보한다. 한국군 운영단은 또한 통행 신청서 변경사항을 관리구역 통제반에 알리고 당일 근무 종료 시에 이에 대한 요약 보고서를 서면으로 관리구역 통제반에게 제공한다.
- d. 응급 통행 신청서: 응급 통행 신청서는 생명, 사지 혹은 시력을 잃을 위험에 처한 인원을 위해 촉박하게 접수되는 신청서이다. 관리구역 통제반은 응급 통행 신청서를 승인한 후, 이를 즉시 관련 인원에게 통보한다. 한국군 운영단은 관리구역 통제반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공동일직실 통역관을 통해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공동일직장교와 연락을 취해 승인을 얻도록 한다.
- e. 긴급 통행 신청서: 긴급 통행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건강상의 문제, 가족의 사망이나 중병,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인원의 미계획 소요 등으로 인해 신청되는 사전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통행이다. 이러한 신청서에 대해 한국군 운영단은 관리구역 통제반에 연락해 승인을 얻고, 공동일직실 통역관을 통해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공동일직장교와 연락을 취해 승인을 얻도록 한다.
- f. 비인가 통행: 비인가 통행은 유엔사 및/혹은 북한군의 분명한 승인을 받지 않은 통행이나 통행의 일부로 정의된다. 이는 인원, 차량 혹은 화물이 인가 없이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것이나 예정되지 않은 시간에 통과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비인가 통행이 발생할 경우, 한국군 운영단은

관리구역 통제반에 즉각 이를 통보해야 한다. 관리구역 통제반은 관련 정보를 종합해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작전장교에게 보고하여 조사 필요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서식 5-1. 남북관리구역 군사분계선 통행 신청 절차

5-6. 남북관리구역 출입 및 이동

- 남북관리구역 출입을 요하는 인원은 반드시 유효한 신청서를 유엔사군정위 비서처를 통해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한다(남측 남북관리구역에 한함). 신청서는 반드시 최소 96 시간 전에 제출되어야 하고, 관리구역 통제장교에게 제출하거나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군정위 및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인원들에게는 남측 비무장지대 내에서 완전한 이동의 자유가 보장된다. 이러한 이동의 자유는 남측 남북관리구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언론사의 남측 남북관리구역 방문은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및 유엔사 공보실과 협조한다.
- 남측 남북관리구역에 진입하는 단체의 규모와 구성은 20 명으로 제한된다(군사분계선 통행은 제외). 남북관리구역 안에 있는 동안 모든 인원은 정전협정, 정전협정 후속합의서 및 본 규정 제 5 장에 따라 적절한 표식을 착용한다. 인원들은 실시하는 작업에 맞는 적절한 복장과 완장을 착용한다(예: 위장무늬 보호장구를 비롯하여 어떤 형태든 위장무늬 복장을 착용한 민간인 작업 인원들은 출입이 허가되지 않는다). 차량은 정전협정, 정전협정 후속합의서 및 본 규정 제 5 장에 따라 표시한다. 부적절한 깃발 혹은 다른 표식으로 표시된 차량은 어떠한 경우라도 작업을 실시하기 위해 남북관리구역에 출입하는 것이 허가되지 않는다. 관리구역 통제반은 작업 차량이 관리구역에 들어가기 전에 관련 작업 인원들이 적절하게 승인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을 점검한다.

e. 남측 남북관리구역 내에서의 이동 수단(군사분계선 통행은 제외)은 승합차량 2 대 혹은 30인용 미니버스 1 대로 제한된다.

f. 언론사 인원들은 유엔사 공보실이 지정한 장교 혹은 동급의 민간인과 동행해야만 한다. 언론사 인원에 대해서는 서면 혹은 유선으로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에서는 GOP 철책선이 남방한계선 이북으로 추진되어 비무장지대 내에 위치해 있다. 언론기관이 유엔사 공보실 및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의 사전 승인 없이 이 지역에서 남방한계선 전방 지역을 활동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

5-7. 신분증 및 출입증

a. 본 규정 제 10 장에 의거, 비무장지대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은 적절한 신분증을 항상 소지해야 한다.

b. 비무장지대에 출입하는 모든 개인은 비무장지대 내 어느 곳을 방문하든지 출입 희망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2일 전까지 개별적으로 혹은 단체의 일원으로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의 구체적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체에 소속되어 있든 개인 자격이든 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인원은 출입이 거부된다.

c. 비무장지대 출입을 허가받은 인원들은 관련 경비 인원이나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인원의 요구가 있을 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요구를 받았음에도 필요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현지 경비부대는 해당 인원을 현장에서 즉시 비무장지대 외부로 안내한다.

5-8. 기타 고려사항

a. 군사분계선 통행에 앞서 한국군 운영단의 국방부 인원은 남북관리구역 안전 브리핑을 제공하거나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카드를 제공해야 한다. 이 브리핑은 군사분계선 통과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북쪽에서 남북관리구역에 진입하는 절차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

b. 때로는 작업 인원들이 북측 비무장지대에서 작업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북한군이 이 지역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국방부/통일부는 정전협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북측 비무장지대에서 작업을 하는 인원들이 관련 절차 및 해당 지역의 지형을 숙지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

제 6 장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및 중감위에 대한 원조 및 지원

6-1. 개요

정전협정은 적대 쌍방 지휘관들이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 군정위와 중감위가 그들의 기능과 책임을 수행할 때에 충분한 보호 및 일체의 가능한 방조와 협력을 제공한다(정전협정 제13항 ㅅ목).

b. 군정위와 중감위가 필요로 하는 군수, 통신 및 수송 지원을 제공한다(정전협정 제13항 ○목).

c. 군정위 및 기타 군정위 기구가 비무장지대/한강하구에 출입하고 이 지역 안에서 이동하는 데 있어 완전한 자유를 보장한다. 비무장지대 내의 두 지점이 비무장지대 내에 전부 들어 있는 도로로써 연결되지 않는 경우에 이 두 지점 간의 반드시 경과하여야 할 통로를 왕래하기 위하여 어느 일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지역을 통과하는 이동의 편리를 허용한다(정전협정 제 11 항).

6-2. 책임

한국 합참의장, 구성군 사령관 및 지정된 지휘관, 그리고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은 정전협정의 제반 조항에 따라 유엔사군정위 및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에 경비를 제공하고, 이동의 편의를 보장하며, 행정 및 군수 지원을 제공하고, 전적으로 협조할 책임이 있다.

6-3. 이동과 경비

a. 유엔사군정위 대표 및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인원에게는 남측 비무장지대에 출입하고 이 지역 안에서 이동하는 데 있어 완전한 이동의 자유가 제공된다.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인원들이 남측 비무장지대 내에 있는 동안 필요에 따라 경호를 제공한다.

b. 유엔사 비무장지대 민정경찰은 비무장지대 유엔사 측 지역에서 특별조사반이 작전을 실시하는 동안, 북한군/중국인민지원군 측 인원들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들을 비롯하여, 중감위 참관단을 포함한 모든 특별조사반 인원에게 경호를 제공하며 안전을 보장한다. 양측 인원으로 구성된 공동감시소조는 상당 기간 동안 운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향후 공동감시소조가 운용된다면, 조원들이 일방 혹은 다른 일방이 통제하는 지역 쪽으로 비무장지대를 벗어나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감시소조 조원들이 비무장지대를 벗어났다 다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만일 공동감시소조의 북한군/중국인민지원군 측 조원들이 비무장지대에서 한국 쪽으로 나와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엔군 사령관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한다. 승인이 있을 경우, 유엔사 측 비무장지대 민정경찰은 공동감시소조의 모든 조원들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경호를 제공한다.

6-4. 중감위 인원의 경호 및 경비

a. 중감위 인원은 중감위 캠프와 남방한계선 사이 및 공동경비구역 내 각 통로상에서 제약 없는 이동이 허용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중감위가 경비 지원을 위해 경비대대와 협조해야 할 수도 있다.

b. 중감위 대표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은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과 경호 및 경비 인원에 대한 소요를 협조한다. 경호 및/혹은 경비 지원은 통상적으로 해당 대표가 서면으로 요청한다. 그러나, 대표 부재 시 혹은 비상시에는 해당 대표단 소속 장교 누구라도 이를 요청할 수 있다.

c.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이 중감위 인원들을 위한 경호 및 경비 인원을 제공한다. 유엔사군정위 수석대표는 특수 상황 혹은 긴급 상황 발생 시에 구성군 사령관 및 지정된 지휘관들에게 경호 및 경비 인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경호 및 경비는 통상 현역 사병이 맡게 되며, 필요시 무장을 할 수 있다.

6-5. 행정 및 군수 지원

유엔사군정위 비서처는 한국과 남측 비무장지대 내에서 중감위 대표단 소속 인원들에게 시설, 주거 관리, 수송, 통신을 포함한 다음과 같은 행정 및 군수 지원을 제공한다:

- a. 환문점 내의 유엔사 건물, 통신 및 기타 지정된 시설의 운영 및 유지.
- b. 캠프 보니파스 내의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캠프에 있는 특정 건물들의 운영 및 유지.
- c. 유엔사 측 군정위 본부구역 “갑” 구 내의 스웨덴/스위스 캠프 시설의 운영 및 유지.

6-6. 원조 및 협조

- a. 구성군 사령관 및 지정된 지휘관들은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인원과 중감위 인원이 기능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예하 조직 및 부대가 가능한 모든 원조와 협조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 b. 공동감시소조/특별조사반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엔사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민정경찰 부대 및/혹은 구성군 사령관과 지정된 지휘관들의 기타 예하 기구 및 부대에 직접 협조와 지원을 요청해야 할 필요가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청된 원조 및 지원이 제공되고 전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 c. 중감위 대표 및 참모 보좌인원에게는 외교관에게 통상적으로 부여되는 특전, 대우 및 면책이 항시 부여된다. PX 와 커미서리를 포함한 모든 미측 시설물과 영내 매점 이용은 한국 법에 따라 허가되고 미 국방성 방침 및 절차의 적용을 받는다.

제 7 장 정전협정 위반 보고 및 조사

7-1. 권한

정전협정 제17항에 따라 유엔군 사령관은 관할구역 내에서 정전협정 준수를 보장할 책임이 있고, 제13항 □목에 따라 자신이 지휘하는 사령부 내에서 발생한 정전협정 위반사항이 적절하게 해결되도록 할 책임을 맡고 있다. 정전협정 제27항에 따라 일방의 군사정전위원회의 수석대표는 정전협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건에 대한 조사반을 파견할 권한이 있다. 제29항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는 확정된 위반사항을 쌍방 사령관들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

7-2. 개요

본 규정은 어느 일방에 의한 정전협정 제반 조항의 위반, 정전협정 제반 조항의 분명한 정신과 의도의 위반, 정전협정 제17항에 의거 정전협정 제반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유엔군 사령관이 수립한 규정이나 명령의 위반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정의한다. 정전협정 후속합의서상의 조항 및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도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되나, 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정전협정 위반은 한반도 전역과 그 인접 수역, 그리고 한반도 상공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다. 정전협정 위반의 경증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해 본 규정은 정전협정 위반을 ‘중대한’ 위반과 ‘경미한’ 위반으로 구별하여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어떤 상황이나 정전협정 위반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조사를 유엔사군정위와 한국군 중 어느 쪽이 실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니다. 유엔사군정위 대표단은 모든 사건을 사안별로 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조사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정전교전규칙의 내용에는 별도의 보안등급이 부여되어 있으며, 정전교전규칙과 관련한 일반적인 질문은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작전과에 이메일(주소:

pacom.yongsan.uncmac.list.asec-o@mail.mil)로 문의할 수 있다.

7-3. 보고

a. 한국 내 모든 부대는 정전협정 위반으로 추정되는 사건이나 직접 관측한 위반 사건을 지휘계통을 통해 즉시 보고해야 한다. 서울지휘소와 한국 합참을 비롯한 이러한 보고를 받은 제대는 접수 즉시 이를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에 전달해야 한다.

b. 정전협정 위반으로 추정되는 사건을 보고할 때에는 다음 주요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 관측자: 성명, 계급, 소속

(2) 인원: 사건에 관련된 인원의 수, 소속, 국적, 군복, 표식(완장, 깃발, 부대 패치), 소지하고 있던 장비나 화기 등에 대한 설명

(3) 사건 개요: 아군의 대응을 포함한 사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 양측 간 총격이나 적대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4) 장소: 정전협정 관련 주요 지표인 군사분계선, 남방한계선, 북방한계선 등으로부터의 거리와 좌표가 포함된 사건 발생 장소에 대한 정보

(5) 일시: 사건 최초 발생 시점 및 후속 조치 실행 일시

(6) 현 상황: 대응 부대가 취한 조치, 해당 부대의 현재 및 향후 대응태세, 적대행위 관련 현 상황,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조사 또는 후속 보고 계획

(7) 정전협정 평가: 정전협정이나 유엔사 규정 551-4 위반 가능성에 대한 기술

(8) 초기 대응 조치(실시되었을 경우): 정전교전규칙에 따른 조치

c. 추가 정보가 상세히 기록된 후속 보고서를 적시에 유엔사군정위 비서처로 전송한다.

7-4.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사건 분석

a. 정전협정 위반으로 추정되는 사건에 대한 보고가 접수되면 유엔사군정위 비서처는 이를 유엔사군정위 수석대표와 유엔사 참모장에게 보고한다.

b. 유엔사군정위 비서처는 한국군 군정위 연락단을 통해 사건 관련 후속 정보를 취합하여 유엔사군정위가 사건 해결을 위한 최상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 정보를 제공한다.

c. 유엔사군정위 차원의 검토가 필요한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은 수석대표에게 유엔사군정위 소집을 건의한다.

7-5. 협력적 접근

a. 유엔군 사령관은 유엔사 통제지역에서 발생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추정되는 사건을 조사하는 데 있어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와 한국군 부대 간 “협력적 접근”을 지시하였다. 이는 정전 사안에 관한 유엔사와 한국군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정전협정을 보다 잘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한 신뢰를 다지려는 의도이다.

b. 협력적 접근에 기반하여, 유엔사군정위 대표단은 정전협정 위반이 보고될 경우 이를 사안별로 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조사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1) 사안이 중대하며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되거나 복잡한 사건의 경우, 수석대표는 유엔사군정위 회의를 소집하여 적절한 조사방법을 심의한다.

(2) 보다 일상적인 사건의 경우, 유엔사군정위 회의 소집 없이 유엔사군정위 비서장과 유엔사군정위 대표단 간의 토의를 통해 조사 방법을 결정한다.

c. 유엔사군정위 수석대표가 적절한 조사 방법을 승인하면, 유엔사군정위 비서처는 해당 사건 및 결정된 조사 방법을 중감위에 통보한다.

7-6. 유엔사군정위 소집

a. 필요하다고 판단 시, 유엔사군정위 비서처는 사건 대응을 위한 적절한 조사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유엔사군정위 회의 일정을 수립한다.

b. 정전 관련 사건에 대한 유엔사군정위 대응 회의에는 유엔사군정위 대표 5 명,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유엔사 법무실 및 사건 유형에 따라 기타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중감위도 참관단 자격으로 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한다.

c. 유엔사군정위 비서처는 유엔사군정위 회의 개시 24 시간 전까지 사건 관련 상세 정보가 담긴 사전 자료를 제공한다.

7-7. 유엔사군정위 회의

a. 비서처는 유엔사군정위의 사건 대응 회의에서 사건 관련 세부 사항을 브리핑한다.

b. 비서처는 유엔사군정위 대표들에게 해당 사건의 정전협정 관련 여파와 영향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c. 유엔사 법무실은 유엔사군정위 대표들에게 해당 사건의 정전교전규칙 관련 문제들과 법적 영향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d. 브리핑, 질의응답 및 토의가 끝나면 외부 기관 참석자들은 퇴장하고, 유엔사군정위 대표들과 비서장만 남아 적절한 조사 방법을 심의, 결정한다.

e. 유엔사군정위가 지시할 수 있는 조사 방법에는 한국군의 자체 조사,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및 유엔사 법무실의 적절한 지원하에 실시하는 한국군의 자체 조사,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의 특별조사 등 크게 세 가지가 있다.

7-8. 한국군 자체 조사

- a. 기준: 유엔사군정위는 정전협정이나 정전교전규칙의 경미한 위반 중 북한군이 연루되지 않고 한국군 내부적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 한국군의 자체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b. 사례: 유엔사군정위는 비무장지대 내 한국군의 총기 오발(군사분계선을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과 남측 비무장지대 내 무단 출입, 지뢰 폭발 사고 또는 비인가 화기 반입 등에 대해 한국군 자체 조사를 고려할 수 있다.
- c. 실행: 유엔사군정위가 한국군의 자체 조사를 요청하면, 수석대표는 한국 합참이 적절한 한국군 부대에 지시하여, 30 일 이내에 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유엔사군정위 비서처가 합참에 연락을 취하는 것을 승인한다. 만일 합참 측에서 지연이 발생할 경우, 유엔사군정위는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조사 완료 후 조사를 실시한 부대는 조사 결과, 정전협정/정전교전규칙 관련 영향, 시정조치 건의 등이 담긴 자세한 후속 보고서를 한국 합참을 통해 유엔사군정위 수석대표에게 제출한다. 유엔사군정위의 검토를 위한 회의 소집에 앞서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와 유엔사 법무실은 해당 보고서를 검토하여 한국군의 조사 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한국군 조사 보고서에 대한 토의를 위해 한국 합참 및 관련 한국군 부대 관계자가 유엔사군정위 회의에 참석한다.
- d. 중감위 참여: 본 규정 제 1-4.e. 15a 항(6 쪽)에 명시된 '2016 년 중감위의 정전 의무 및 기여 확대 재확인 각서'에 의거, 중감위는 비무장지대 내외에서 실시되는 유엔사군정위의 정전협정 관련 작전/활동을 참관하도록 초청 또는 요청받는다. 중감위의 참관은 이를 통해 유엔사의 투명성 및 정전협정의 제반 조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과시할 수 있는 유엔군사령관의 중요한 자산이다. 그러므로, 현지 부대 지휘관들은 중감위가 한국군 자체 조사를 참관할 수 있도록 재량에 따라 중감위를 초청할 것을 권장한다.
- e. 결과: 유엔사군정위 수석대표는 한국군 조사 보고서 검토를 위한 유엔사군정위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이 때 중립국감독위원회의 회의 참관을 요청한다. 토의 및 한국군 보고서가 만족스러울 경우, 수석대표는 이를 승인하고 한국군이 건의한 시정조치의 실행을 지시할 수 있다. 한국군의 조사 보고서가 해당 사건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유엔사군정위는 한국군에 추가 조사와 후속 보고를 요청하거나, 한국군이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와 유엔사 법무실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아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거나 또는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특별조사반이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조사의 복잡성과 사건 현장의 경계 상황에 따라 추가 조사는 2~3 주 동안 실시한다.
- f. 후속 조치: 필요시 유엔사군정위 수석대표는 한국군의 조사 내용과 결과를 유엔군사령관에게 보고한다. 비서처는 한국군 보고서와 조사 결과가 담긴 기록 각서를 기록용으로 보관한다.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은 이 결과를 정례 회의를 통해 중감위와 유엔사 연락장교단에 설명한다.

7-9.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및 유엔사 법무실의 적절한 지원하 한국군 자체 조사

- a. 기준: 유엔사군정위는 외부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유엔사에 중요한 사건 또는 한국군의 자체 조사가 실시되었으나 조사가 불충분했던 사건에 대해 한국군이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및 유엔사 법무실의 적절한 지원을 받아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b. 사례: 남측 비무장지대 내 대규모 비인가 공사, 북방한계선 인근 한국군의 사격 및 비무장지대를 경유한 북한군 귀순 등에 대해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와 유엔사 법무실의 적절한 지원을 받아 한국군이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c. 실행: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와 유엔사 법무실의 적절한 지원을 받아 한국군이 조사를 실시하도록 유엔사군정위가 요청하게 되면, 유엔사군정위 비서처는 한국군 조사장교와의 연락을 담당할 조사연락장교를 지정한다.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조사연락장교는 조사 참여를 협조하고 유엔사를 비롯하여 필요시에는 주한미군사나 연합사 소속 전문인력이 참여하도록 협조한다. 조사연락장교는 유엔사 법무실과 협조하여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조사연락장교는 조사 활동과 실시에 있어 한측 조사장교에게 자문을 제공한다. 한국군 부대는 조사 결과, 정전협정/정전교전규칙 관련 영향, 시정조치 건의 등을 포함한 세부 보고서를 유엔사군정위 수석대표에게 제출한다.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와 유엔사 법무실은 해당 보고서를 검토하고, 비서처는 동의, 조건부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공식 각서로 작성하여 유엔사군정위에 제출한다. 경우에 따라 유엔사는 중감위가 조사를 참관할 수 있도록 초청한다.

d. 결과: 유엔사군정위 수석대표는 한국군 보고서와 비서처 기록각서를 검토하기 위해 유엔사군정위를 소집하고 중감위에 참관을 요청한다. 토의 및 한국군 보고서가 만족스러울 경우, 수석대표는 이를 승인하고 한국군이 건의한 시정조치 실행을 요청할 수 있다. 한국군의 조사 보고서가 해당 사건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유엔사군정위는 한국군에 추가 조사와 후속 보고를 요청하거나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특별조사반에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조사의 복잡성과 사건 현장의 안보 환경에 따라 추가 조사는 2~3 주 동안 실시한다.

e. 후속 조치: 필요시 유엔사군정위 수석대표는 한국군 조사 내용과 결과를 유엔군 사령관에게 보고한다. 비서처는 한국군 보고서와 사건 조사 결과가 담긴 기록 각서를 중감위에 제공하고 기록용으로 보관한다.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은 이 결과를 정례 회의를 통해 중감위와 유엔사 연락장교단에 설명한다.

7-10. 특별조사반

a. 정전협정 제 25 항 목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는 공동감시소조의 운영을 지시할 수 있다. 동 항목에 의거, 공동감시소조는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에서 발생한 정전협정 위반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군정위에 보고하였다. 공동감시소조는 유엔군사령부, 북한군, 중국인민지원군으로 구성되었다. 관례적으로 공동감시소조 파견에 앞서 각 측은 공동감시소조 조사에 대한 준비의 일환으로 특별조사반을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사건에 대한 초기 정보를 수집하였다. 유엔사-북한군 간 공동감시조조 활동은 1996년에 마지막으로 실시되었다. 그 후 북한군은 정전협정 위반을 조사하기 위한 공동감시소조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1996년부터 2016년까지 유엔사는 모든 정전협정 위반 추정 사건들에 대한 조사를 자체 특별조사반을 통해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감시소조는 유엔사와 북한군이 관련된 사건을 조사하는 데 있어 활용 가능한 수단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b. 특별조사반 기준: 유엔사군정위는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 양측 간 적대행위, 국제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 유엔군 사령관의 정전협정상 책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등에 대해서 특별조사반에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c. 사례: 유엔사군정위는 북한군에 의한 적대 행위, 양측 간 교전, 군사분계선 침범, 미상 혹은 불명의 원인에 의한 총격 등에 대해 특별조사반을 통한 조사를 고려할 수 있다.

d. 실행: 유엔사군정위 수석대표는 비서처에 특별조사 실시를 서면으로 지시하고,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은 조사장교를 지명한다. 유엔사군정위 수석대표는 중감위의 정전협정상 책임과 확대 과업에 의거하여 중감위가 특별조사를 참관할 수 있도록 공식 초청한다.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은 비서처에서 유지하는 유엔사 회원국 임무수행 순서에 따라 2 개의 회원국 연락장교를 초청한다. 조사장교는 중감위, 유엔사 연락장교, 기타 유엔사 전문인력 등을 포함하는 조사반을 구성한다. 조사장교는 유엔사 법무실과 협조하여 법률 자문을 받는다. 조사장교는 조사를 실시하고 모든 증거를 수집 및 보전한다. 조사의 복잡성과 사건 현장의 경계 상황에 따라 추가 조사는 2~3 주 동안 실시한다. 조사장교에 대한 보다 상세한 지침은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자체 예규를 참조한다. 한국 합참과 관련 한국군 부대는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조사반에 모든 필요한 지원과 접근을 제공한다. 조사장교는 정전협정 위반 여부, 후속조치 및 시정조치 건의 등이 포함된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조사보고서는 유엔사 법무실의 법적 검토를 거친 후 유엔사군정위 수석대표의 동의를 받는다.

e. 결과: 필요시 유엔사군정위 수석대표는 조사 결과를 유엔군 사령관에게 보고한다. 건의된 후속조치는 유엔사의 승인을 받은 후 관계 기관에 배포한다. 조사 보고서는 유엔사 참모부, 한국 합참, 중감위 및 유엔사 연락장교단에 배포한다. 유엔사군정위 비서처는 보고서를 기록용으로 보관하고 유엔군 사령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하는 연례 활동 보고서에 그 결과를 포함시킨다.

7-11. 조사 보고

위반사건의 경증과 정전협정의 중대한 위반인지 경미한 위반인지에 대한 판단은 조사 중에 이루어진다. 위반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상기 조사 방법(한국군의 자체 조사,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와 유엔사 법무실의 적절한 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한국군의 자체 조사, 유엔사군정위 특별조사)을 통해 해당 사건이 중대한 위반인지 경미한 위반인지 보고한다. 유엔사군정위 비서처는 조사 보고서 최종본 사본을 중감위에 제공한다. 중대한 위반과 경미한 위반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a. 중대한 위반: 다음의 예는 과거에 최종 조사 결과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된 위반행위에 대한 설명이다. 중대한 위반의 예로는 일방의 인원, 무인 자산 혹은 화기 발사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한강하구나 상대방의 육지까지 침범하는 행위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상대방의 육지에 인접한 수역, 이러한 수역의 상공, 비무장지대/한강하구 상공 전역 혹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지역을 침범하는 행위도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예는 다음과 같다:

(1) 일방의 무장 인원이 군사분계선이나 한강하구를 통과해 상대방의 통제하에 있는 지역으로 넘어가는 행위.

(2) 군사분계선/한강하구/북방한계선 너머로 화기를 발사하고/하거나 상대방의 통제하에 있는 지역의 상대방 인원, 경비정 혹은 항공기에 화기를 발사하는 행위.

(3) 무인항공기나 군용 풍선을 비롯한 일방의 항공기 혹은 군용 장비가 상대방 지역의 상공 혹은 비무장지대/한강하구 상공을 조금이라도 침범하는 행위.

(4) 일방의 무장 선박이 상대측에 육지에 인접한 수역을 침범하는 행위.

(5) 상대방이 특정 항구 혹은 특정 해안지역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다른 일방이 실시하는 해군 봉쇄 행위.

(6) 북한군/중국인민지원군 측과 유엔사 측 인원, 선박 혹은 항공기 사이의 교전이나 기타 적대적 교류.

(7) 비무장지대 내에서 요새 진지, 검문소, 경계초소, 사격장 혹은 지뢰지대 등, 기존 시설물을 크게 개선하는 건설 행위.

(8) 전차, 장갑차, 미사일, 튜브 발사식 광학 추적 유선 유도미사일(토우)을 포함한 로켓트, 박격포, 혹은 야포와 같은 주요 군 장비들을 비무장지대 내로 반입하는 행위.

(9) 군정위 본부구역 내에서 화기를 발사하거나, 권총을 뽑아들거나, 공격(싸움)을 하는 행위.

(10) 심리작전이나 전자전 공격 등 정전협정에 의거하여 민정경찰 작전을 실시하는 상대 측의 능력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거나 상대측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격적 군사 작전.

b. 경미한 위반행위: 경미한 위반행위는 일반적으로 정전협정에 대한 무관심 혹은 불성실성을 보여주는 행위로 분류할 수 있다. 예는 다음과 같다:

(1) 비무장지대 내에서 일방에 의해 화기가 발사되었으나, 발사된 탄이 군사분계선을 넘어가지 않거나 상대방 지역에 피탄되지 않은 경우.

(2) 비인가 화기를 비무장지대 내로 반입하는 행위(중대한 위반행위로 상기 명시된 화기 제외).

(3) 휴대용 로켓발사기를 비무장지대 내로 반입하는 행위.

(4) 사계 청소 및 위장 등을 포함해 비무장지대 내에서 소규모 요새 진지, 철조망 혹은 참호를 인가 없이 구축 혹은 개축하는 행위.

(5) 상대 측을 조명탄 및/혹은 탐조등으로 괴롭히는 행위.

(6) 옷에 적절한 완장이나 식별 표식 미착용 또는 차량에 깃발 미부착 등을 포함하는 식별 표시를 위반한 행위.

(7) 상대방의 비무장지대, 한강하구 혹은 영토/영해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

(8) 고의로 혹은 부주의로 산불을 일으키는 행위.

(9) 상대 측의 경비인원 및/혹은 허가된 방문객에게 욕설을 하거나 이들을 희롱하는 행위.

(10) 우발적 혹은 고의적으로 지뢰를 폭파시켰으나 파편이 군사분계선을 넘어가지 않은 경우.

(11) 비무장지대 내에서 실탄 혹은 공포탄 사격을 실시하는 행위(유엔사가 승인한 사격장에서 영점확인 및 시험사격을 위해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 제외)

(12) 이동식 확성기를 비롯한 비인가 군용 차량이나 장비를 비무장지대 내로 반입하는 행위(중대한 위반행위로 상기 명시된 것 제외).

7-12. 북한군 위반사항

a. 관측한 북한군의 위반사항들을 모두 보고하는 것은 중요하다.

b. 북한군의 가장 일반적인 정전협정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다:

(1) 비무장지대 내에서 인원과 차량에 부적절한 표식을 사용하는 행위. 북한군의 신원 표식 요건은 서식 10-3 을 참조한다.

(2) 비무장지대 내에 자동화기/공용화기를 반입하는 행위. 공용화기(즉, 박격포, 무반동총, 기관총) 관측 시 이는 일반적으로 현장 보고한다. 개인 자동화기 휴대는 통상적인 경로를 통해 보고한다.

(3) 비무장지대 내에서 훈련 연습을 실시하는 행위.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분대 전술, 진지 점령 혹은 돌격 기동 연습은 도발적인 행위이며 정전협정 위반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민정경찰이 북측 철책을 순찰하는 활동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이러한 순찰 활동은 비무장지대 민정경찰의 목적인 “민사구제 및 행정 활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위반행위가 아니다.

제 8 장 정전 유지 활동

8-1. 권한

a. 정전협정: 유엔군 사령관은(한국군 포함,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모든 병력을 대표하여) 정전협정에 대한 유엔사 측 지휘권자로서 정전협정의 완전한 준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정전협정은 유엔군 사령관에게 군사분계선 이남의 비무장지대 내에서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을 위한 단독 책임을 부여한다. 유엔군 사령관의 통제지역은 비무장지대에 인접한 모든 수역, 비무장지대 상공 및 서해에 위치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및 우도로 구성된 5 개 서북도서군을 포함한다. 제 3 장에 기술된 바와 같이, 유엔사 측 비무장지대는 군사분계선과 남방한계선 사이 폭 2 천 미터의 구역이며, 한강하구에서는 만조 시 수제선이 한강하구와 양측 군사통제지역 간 경계선이 된다.

b. 미 합참 유엔사 관련 약정 및 전략 지침: 제 5b 항에 지시된 바에 따라, 유엔군 사령관은 “1953년 체결된 한국 정전협정의 제반 조항을 이행한다. 이를 위해, 유엔군 사령관은 한반도와 그 인접 수역에서 작전활동을 하는 모든 미국, 한국 및 유엔사 군 병력이 정전협정을 준수하도록 정전 관련 지시를 하달하고 절차를 수립할 권한을 갖는다”(2018년 6월 10일 자 유엔군사령부 관련 약정 및 전략 지침).

c. 비무장지대 안쪽과 한강하구를 따라 위치한 유엔사 GP/OP 는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한국군 1 군, 3 군 및 해병 2 사단 병력에 의해 운영된다. 유엔사의 통제하에 있는 서북도서의 유엔사

OP들은 별도의 한국 해병대사령부 예하 해병부대들에 의해 운영된다.

8-2. 목적

- a. 유엔사군정위 비서처는 정전 준수를 위한 유엔군 사령관의 집행 기관으로서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를 연한 모든 전방 사단들이 유엔군 사령관의 정전 책임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비무장지대 점검, 정전 교육 브리핑 및 조언·지원 방문을 실시한다.
- b. 비무장지대 안쪽과 한강하구를 따라, 그리고 서북도서에 위치한 유엔사 민정경찰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군 부대에 대한 정기적/일상적 점검은 정전협정에 명시된 조항을 준수하고자 하는 유엔군 사령관의 지속적인 의지와 결심을 보여준다. 또한, 유엔군 사령관은 이러한 점검을 통해 비무장지대 내에서 일어나는 유엔사와 북한군 양측의 모든 활동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민정경찰이 정전협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비무장지대에 배치된 인원들이 정전협정/정전교전규칙에 대해 제대로 훈련받고 이해하도록 할 수 있다. 모든 전방 비무장지대 한국군 부대들을 대상으로 정전 교육 브리핑 및 조언·지원 방문을 실시함으로써 정전협정의 이해 및 준수를 증진할 수 있다.
- c. 비무장지대 점검은 유엔군 사령관이 정전협정의 적절한 준수를 보장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작전과는 비무장지대/한강하구와 공동경비구역 공동경비대대, 정전협정 제 13 항 ㄴ목에 언급된 5 개 도서군에 위치한 모든 한국군 전방 부대 주둔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점검을 포함하여 비무장지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주관한다.
- d. 정전 교육의 목적은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에 배치된 한국 군인들이 정전협정과, 정전교전규칙 및 그 적용법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주관하에 중감위의 지원을 받아 한국군 전방 부대에서 공식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 e. 유엔사 조언·지원 방문의 주목적은 비무장지대 작전에 적용되는 정전협정과 정전교전규칙을 한국군 전방 부대 지휘관들이 확실히 이해하도록 하는데 있다. 조언·지원 방문은 격의 없는 교류를 통해 부대 지휘관들이 비무장지대 점검을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돋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것이다. 또한, 조언·지원 방문은 한국군 전방 부대 지휘관들과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간 대화와 공동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8-3. 참고용어

- a. 비무장지대 내와 한강하구 및 서북도서에 주둔하고 있는 한국군 전방 부대의 임무는 한국 방어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지역 내 북한군의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유지하는 것이다. 비무장지대 내에서 작전 중인 부대의 병력 배치, 훈련 및 장비 투입은 정전협정에 따라 승인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정전협정의 승인 범위를 벗어나는 모든 사항은 유엔군 사령관의 명백한 승인을 요한다. 유엔사군정위 비서처는 이와 같은 기준과 표준을 적용하여 비무장지대 점검을 실시하며 중감위는 이를 참관할 수 있다.
- b. 유엔사 경계초소(GP)/관측소(OP) 정의: 비무장지대 내 혹은 한강하구를 따라 북한군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유지하고, 침투 기도를 차단하며, 해당 시설물에 주둔하는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민정경찰 부대들에 대한 방호 및 경계를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모든 시설물들은 유엔사 GP 혹은 OP의 형태로 운영된다. 이러한 GP와 OP는 상기 언급된 임무를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것 외에도,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민정경찰이 비무장지대 유지 및 통제 등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유엔기가 계약되어야 하는 시설물인 GP는 북한군

침투 시 전투 진지로서의 활용에 주목적을 둔 비무장지대 내 구조물로 정의한다. OP는 북한군 및 비무장지대의 관측을 주목적으로 활용하는 비무장지대 내 구조물이다.

8-4. 책임

a. 유엔사군정위 비서처는:

(1) 한국군 전방 부대에 주기적으로 정전교육 브리핑을 제공하여 비무장지대 내의 병사 및 지휘관들에게 정전 역사 및 정전 준수와 정전교전규칙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한다.

(2) 정전교육 브리핑과 연계하여 정전 준수와 비무장지대 점검 절차에 대해 격의없는 정보 교환 및 토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군 전방 부대 연대급 참모들과 조언·지원 회의를 실시한다.

(3) 유엔군 사령관의 위임하에 정전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비무장지대 내부와 한강하구, 서북도서에 주둔하고 있는 한국군 부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 비무장지대 점검 기준 세부사항은 제8-6항을 참조한다.

(4) 한국군 부대 및 지휘관들에게 점검 결과를 제공하고 유엔군 사령관에게 보고할 정전 준수 현황을 기록하기 위해 비무장지대 공식 점검 보고서를 작성한다.

(5) 중감위 확대과업에 의거하여 중감위가 정전 준수 활동에 참여하고 참관할 수 있도록 초청한다.

b.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1 군, 3 군, 해병 2 사단, 서북도서 부대들은:

(1)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점검 및 정전 교육반 인원이 임무와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과 협조를 제공한다. 모든 점검이 실시되는 동안 점검반이 적시에 출입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2) 비무장지대에 배치되는 모든 부대들이 비무장지대 교대 투입 전에 정전협정/정전교전규칙에 대해 교육을 받고 이를 철저히 숙지하도록 하며, 비무장지대 투입 후에도 정기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도록 한다.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정전교육반은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서 본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3)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에 비무장지대 내 모든 지역과 인원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4) 점검 보고서에 기술된 시정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한다.

(5) 비무장지대 점검, 정전 교육 및 조언·지원 방문 일정 수립을 위해 한국군 군정위 연락단과 협조한다.

c. 군정위 연락단은:

(1)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점검반과 정전교육반의 점검 및 정전교육을 지원한다.

(2) 수검 대상 사단 및 부대와 점검 및 교육 일시를 조율한다.

d. 중감위는 중감위 확대 과업에 의거하여, 요청에 따라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정전 준수 활동에 사용한 참관 인원을 제공한다.

8-5.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점검반 인원

유엔사군정위비서처 점검반은 다양한 인원으로 구성될 수 있으나,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장교가 점검반장을 맡고,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참모장교들, 유엔사 회원국 연락장교 1 명 및 군정위 연락단 인원 1 명이 동행한다. 초청에 따라 중감위 참관단이 유엔사군정위비서처 점검반과 동행할 수 있다. 가능할 경우, 유엔사군정위 점검반은 수검 부대에 비무장지대 출입 인원의 명단을 사전에 제공한다. 그러나 유엔사군정위비서처 점검반의 이러한 정보 공유는 원만한 협조를 위한 것이며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인원들이 비무장지대에 출입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점검반장이 내린다. 추가적으로, 조언·지원반은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장교,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참모 인원, 정전교육과장 및 정전교육장교로 구성되며, 사용할 시에 중감위 참관단이 점검반과 동행할 수 있다.

8-6. 점검 항목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의 비무장지대 점검은 아래 열거된 정전협정상 의무사항의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표 8-1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의 비무장지대 점검

정전협정 의무사항	점검사항	점검방법
적대병력의 분리를 위한 비무장지대 관리 (정전협정 1항)	군사분계선, 남방한계선 및 군사분계선 표식물의 위치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으며, 병력들이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고 있는가?	부대 본부 및 경계초소/관측소 주요 지휘관 면담. 작전 요도 점검.
적대행위의 방지 (정전협정 6항)	유엔사 정전교전규칙 및 각개병사용 정전교전규칙 카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병력들이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고 있는가?	병사 및 지휘관 면담. 각개병사용 정전교전규칙 카드 점검. 정전교전규칙 교육 실시여부 확인.
	유엔사군정위 특별조사 및 점검 결과를 존중하며, 미준수 사항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시정하였는가?	기실시된 점검/조사 보고서상 미준수 지역에 대한 후속 점검.
비무장지대 및 상대방 통제지역 존중 (정전협정 14~16항)	화기의 오발 및 우발적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	안전 절차 및 예규에 대해 병사 및 지휘관 면담.
비무장지대로부터 군 병력 및 장비 철수 (정전협정 13항)	유엔군 사령관이 인가한 정전협정 예외사항 목록을 숙지 및 이행하고 있는가?	병사 및 지휘관 면담. 비무장지대 내 진지 및 화기 점검.
	비무장지대 내 건축/공사 활동에 대한 신청서를 규정에 따라 유엔사군정위를 경유해 유엔사에 제출하고 있는가?	기제출된 건축/공사 신청서 검토. 건축/공사 현장 점검. 부대 본부 주무장교 면담.

정전협정 의무사항	점검사항	점검방법
유엔사군정위가 승인하지 않은 비무장지대 출입 및 군사분계선 통과 금지 (정전협정 제7, 9항)	유엔사 규정 551-4에 따라 모든 비무장지대 진입로 상에 남방한계선 표식물이 적절히 설치되어 있는가?	남방한계선 및 남방한계선 표식물 점검.
	유엔사 규정 551-4에 따라 항공기 월경 방지 경고 표지판이 적절히 설치, 관리되고 있는가?	항공기 월경 방지 경고 표지판 점검.
	비무장지대 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규정에 따라 비무장지대 출입신청서를 유엔사군정위에 제출하고 있는가?	비무장지대 출입 통제 지점 점검. 비무장지대 출입 신청 주무장교 면담.
	비무장지대 내 모든 인원들이 유엔사 규정 551-4에 따라 적절한 승인을 받았으며, 규정된 표식을 착용하고, 적절한 경호를 받고 있는가?	비무장지대 내 인원 점검.
	관할 안보견학장이 유엔사 규정 551- 5와 551-6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가?	안보견학장 점검.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절차 수립 (정전협정 17항)	정전협정과 유엔사 규정 551-4, 551- 5 및 551-6을 숙지 및 준수하고 있는가?	지휘관 면담. 부대 본부 내 관련 규정 비치 여부 확인.

8-7. 보고

점검 종료 후에는 유엔사군정위 비서처를 경유해 수석대표, 유엔사 참모장 및 중감위 측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그러나, 위반 행위로 의심되는 사항이 점검간식별되는 경우에는, 점검반이 증거 자료를 취합해 이를 보고서에 포함한다. 필요시 유엔사군정위 수석대표와 유엔사 참모장은 유엔사 규정 551-4 제7장 43~49쪽에 의거, 보고된 위반사항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지시한다. 점검 보고서는 한국 합참과 한국군 수검 부대에 전파한다. 위반사항이 언급된 점검 보고서에는 해당 한국군 부대가 보고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사항을 명시한다.

제 9 장

비무장지대 내 안보견학장

비무장지대 안보견학 프로그램은 유엔사 규정 551-6에 의거하여 운영된다. 비무장지대 안보견학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다음 링크의 유엔사 규정 551-6에 명시되어 있다.

http://8tharmy.korea.army.mil/g1_AG/Programs_Policy/Publication_Records_Reg_UNC.htm

제 10 장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및 군정위 본부구역에서 필요한 식별 표지

10-1. 신분증 및 출입증

유엔사 측 비무장지대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세 종류의 신분증과 한 종류의 출입증이 사용되고 있다. 유엔사 측 비무장지대 출입이 허가되는 신분증 및/혹은 출입증은 아래 명시된

인원에게만 발급될 수 있다. 비무장지대 안보견학장 방문이 승인된 인원과 비무장지대 임시 출입증을 발급받은 인원, 그리고 동해지구·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이 승인된 인원은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각 신분증과 출입증의 발급권자는 아래에 명시된 바와 같다.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행정장교는 본 조항에 따라 발급된 모든 신분증과 출입증에 대한 총괄 목록을 유지해야 한다(관련 근거 유엔사 규정 600-1 ‘유엔사 대표 배정’, 유엔사 규정 600-2 ‘유엔사 인원 신임’, 유엔사 규정 606-1 ‘개인 식별 표지 유엔사 신분증’).

a. 군정위 신분증(유엔사 양식 9EK).

(1) 발급권자: 유엔사군정위 비서장.

(2) 발급 대상: 유엔사군정위 대표단,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인원, 유엔사군정위 자문단, 중감위 각국 대표 및 참모 보좌인원.

(3) 필요한 정보/서명: 신분증에는 피발급자의 사진이 부착되어야 하고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함. 신분증 발급에 앞서 피발급자의 신원과 신분증 발급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은 이러한 서명 권한을 유엔사군정위 부비서장(ASEC)이나 참모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4) 유효기간: 발급된 신분증은 인가된 인원이 신분증에 기록된 직위에 보직된 기간 동안 유효함. 유효기간 만료일자를 신분증에 명확히 표기함.

(5) 회수: 군정위 신분증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신분증 소지자가 관련이 없는 임무로 보직이 변경될 시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행정장교에게 반납해야 함.

b. 대성동 신분증(유엔사 양식 7EK).

(1) 발급권자: 유엔사군정위 비서장,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에게 위임.

(2) 발급 대상: 한국 국적의 대성동 주민(민간인). 신분증 전면에 “대성동에 한함”이라는 도장을 찍음.

(3) 필요한 정보/서명: 수령자의 사진과 서명 및 유엔사군정위 비서장 혹은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의 서명이 있어야 함.

(4) 유효기간: 1년간 유효함.

(5) 회수: 신분증 소지자인 대성동 주민이 대성동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할 경우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가 회수하여 무효화시킴.

c. 비무장지대 상시 출입증(유엔사 양식 10EK).

(1) 발급권자: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이 발급권자임.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행정장교는 군정위 본부구역 출입이 필요한 인원들에게 이 출입증을 발급함. 그러나 군정위 본부구역을 제외한 비무장지대 지역에 대해서는 출입증을 일괄 발급할 수 있도록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이 발급권한을 1군과 3군에 위임함.

(2) 발급 대상:

(a) 근무지가 비무장지대 내에 위치하고 남방한계선 이북 지역으로 진입해야 하는 모든

한국군 및 미군 소속 인원(유엔사군정위 제외).

(b) 정규 고용된 장소가 비무장지대 내에 위치하고 남방한계선 이북 지역으로 진입해야 하는 모든 민간인(대한적십자사, 통일부, KSC 및 KGS 직원들).

(c) 근무지 및 정규 고용된 장소란 해당 인원이 한 달에 최소 11 일 이상 상주해야 하는 지역을 의미함.

(3) 필요한 정보/서명: 피발급자의 서명과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의 확인 서명 혹은 1 군과 3 군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인원의 서명이 있어야 함.

(4) 유효 기간: 비무장지대 상시 출입증은 피발급자가 상시 출입증이 필요한 직책에 보직된 기간 동안만 유효함.

(5) 회수: 출입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출입증을 필요로 하는 타당한 유엔사 관련 목적이 더 이상 없는 경우 즉각 발급권자에게 반납해야 함. 발급권자는 출입증의 일부 혹은 전부를 회수할 수 있는 재량을 보유함.

d. 비무장지대 임시 출입은 비무장지대 내 임시 임무에 배정되었거나 임시 지원을 제공하는 군인 및 민간인, 또는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남방한계선 이북 지역으로 진입해야 하는 군인 및 민간인에게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이 허가할 수 있다.

(1) 임시 임무나 임시 지원이란 이를 위해 해당 인원이 상주해야 하는 기간이 한 달에 10 일 이하인 업무를 의미함.

(2) 비무장지대 임시 출입을 신청하는 개인은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이북 지역 출입을 위한 비무장지대 출입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수신: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경유: 연합사/지구사 작참부 작전처 지상작전과), 군정위 본부구역 출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수신: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공동일직실).

10-2. 완장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내에서 지정된 인원은 식별을 위하여 서식 10-1, 10-2 및 10-3에 따라 완장을 착용해야 한다. 북한군/중국인민지원군 측이 착용하는 완장에 대한 설명은 정전협정 후속합의서 “G” 와 제10장에 기술되어 있다. 모든 인원은 완장을 유팔에 착용해야 한다. 완장의 폭은 10 센티미터이며 종류는 다음과 같다.

a. 황색: 모든 유엔사군정위 신분증 소지자는 황색 완장을 착용해야 한다(유엔사 측 군정위 대표 5 명 제외).

b. 청색: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내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에 관련된 정비, 공사 및 기타 인원은 청색 완장을 착용해야 한다(유엔사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민정경찰 제외). 유엔사 측 보도인원도 청색 완장을 착용하되 완장에 영문으로 ‘PRESS’ 혹은 ‘MEDIA’, 그리고 한글로 “기자” 혹은 ‘보도’라고 표기한다. 유엔사의 초청을 받은 방문객은 청색 무지 완장 혹은 ‘GUEST’라고 표기된 청색 완장을 착용해야 한다.

c. 현병 완장: 유엔사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민정경찰 및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경비인원은 흑색 바탕에 백색으로 한글 및 영문이 표기된 현병 완장을 유팔에 착용해야 한다. 미군이 착용하는 완장에는 영문 ‘MP’ 밑에 한글 ‘현병’을 표기하고, 한국군이 착용하는 완장은 영문 ‘MP’ 위에 한글 ‘현병’을 표기한다.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을 제외한 비무장지대 및 한강하구에서 필요한 식별 표지

인원의 구분	차량/선박에 필요한 깃발	필요한 신분증 /출입증	필요한 완장	필요한 식별배지
유엔사군정위 대표인원	황색	군정위 신분증	무	무
유엔사군정위 참모보조	황색	군정위 신분증	황색	무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황색	군정위 신분증	황색	무
유엔사군정위 공동감시소조/특별조사반	황색	군정위 신분증	황색	무
유엔사 비무장지대 민정경찰	청색	비무장지대 상시출입증	현병완장	무
유엔사 한강하구/비무장지대 민정경찰	유엔 및 황색(선박)	비무장지대 상시출입증	현병완장	무
대성동 주민	청색	대성동 신분증	무	무
중감위 스위스/스웨덴 대표단	국기 혹은 중감위 기	중감위 신분증	무	무
유엔사 측 기자*	영어로 'PRESS', 한글로 '기자'라고 적힌 청색 기	영어와 한글로 적힌 기자 신분증	PRESS(기자)라고 적힌 청색 완장	무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청색	비무장지대 상시출입증	현병완장**	JSA 배지
정비/공사 인원	청색	비무장지대 상시 혹은 임시출입증	청색	무
방문객***	청색, 무지 혹은 영어로 'GUEST' 한글로 '방문객'이라고 적힌 기	무	무	무

*황색기로 표시한 차량에 의한 수송도 가능.

**비무장한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인원들이 전투복을 착용한 상태가 아닐 때에는 현병완장을 착용할 필요가 없음.

***방문객들은 항상 유엔사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민정경찰 혹은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의 보호를 받아야 함.

서식 10-1.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을 제외한 비무장지대 및 한강하구에서 필요한 식별표지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에서 필요한 식별 표지

인원의 구분	차량/선박에 필요한 깃발	필요한 신분증/출입증	필요한 완장	필요한 식별 배지
유엔사군정위 대표	황색	군정위 신분증	무	무
유엔사군정위 참모 보조 인원	황색	군정위 신분증	황색	무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황색	군정위 신분증	황색	무
유엔사군정위 공동감시소조/특별조사반	황색	군정위 신분증	황색	무
유엔사 비무장지대 민정경찰*	청색	비무장지대 상시출입증	현병완장	무
대성동 주민	청색	대성동 신분증	무	무(야외에서 작업시 녹색 혹은 황색 모자 착용)
중감위 스위스/스웨덴 대표단	국기 혹은 중감위 기	중감위 신분증(대표단)	무	무
유엔사 측 기자**	영어로 'PRESS', 한글로 '기자'라고 적힌 청색 기	기자 신분증	영어로 'PRESS', 한글로 '기자'라고 적힌 청색 완장	무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청색	비무장지대 상시출입증	현병완장***	JSA 배지
정비/공사 인원	청색	비무장지대 상시 혹은	청색	무
임시 출입증				
방문객****	청색, 무지 혹은 영어로 'GUEST', 한글로 '방문객'이라고 적힌 기	무	무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에서 발급한 방문객 배지

* 군정위 본부구역의 “을”구에서만 인가된 유엔사 비무장지대 민정경찰.

** 황색기로 표시한 차량에 의한 수송도 가능.

*** 비무장한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인원들은 현병완장을 착용할 필요가 없음.

**** 방문객들은 항상 유엔사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민정경찰 혹은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의 보호를 받아야 함.

서식 10-2.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에서 필요한 식별 표지

비무장지대 및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에서 북한군/중국인민지원군 측 인원에게 필요한 식별 표지

인원의 구분	차량/선박에 필요한 깃발	필요한 신분증/출입증	필요한 완장	필요한 식별 배지
조중측 군정위 대표	황색	군정위 신분증	무	무
조중측 참모 보조 인원	황색	군정위 신분증	황색	무
조중측 군정위 비서처	황색	군정위 신분증	황색	무
조중측 공동감시소조/특별조사반	황색	군정위 신분증	황색	무
조중측 비무장지대 민정경찰	청색	비무장지대 상시출입증	한글로 '경무'라고 적힌 적색 완장	무
중감위 체코/폴란드 대표단	국기 혹은 중감위 기	중감위 신분증(대표단)	무	무
조중측 기자*	영어로 'PRESS', 한글로 '기자'라고 적힌 청색 기	기자 신분증	적색 현병완장	무
조중측 공동경비구역 경비대원	청색	비무장지대 상시출입증	흰색 원 안에 영어로 "P" 한글로 '기자'라고 적힌 녹색 완장	JSA 배지
정비/공사인원/방문객	주황색	비무장지대 상시출입증	청색	JSA 배지
비정부기구	주황색	비무장지대 상시 혹은 임시 출입	청색	무
비군용 관용차	주황색	무	청색	무
인도지원단체	주황색	무	청색	무
민간 사업자	주황색	무	청색	무

* 황색기로 표시한 차량에 의한 수송도 가능.

서식 10-3. 비무장지대 및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에서 북한군/중국인민지원군 측 인원에게 필요한 식별 표지

10-3. 기타 식별 양식

a.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금속 배지. ‘공동경비구역 배지’는 유엔 마크와 함께 상단에는 검은색으로 영문 ‘JSA’, 하단에는 숫자가 검은색으로 작게 표기된 다이아몬드 모양의 소형(약 3.8 센티미터 x 3.8 센티미터) 배지이다. 이 배지는 유엔사 측 군정위 본부구역 내 건축, 정비,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경비 및 기타 지원업무를 실시하는 인원들에게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이 발급한다. 이 배지는 우측 가슴 주머니에 착용해야 한다.

b. 군정위 본부구역에 출입이 허가된 모든 방문객은 군정위 본부구역에 들어가기 전에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이 발급한 방문객 배지를 착용해야 한다. 이는 유엔사군정위 귀빈/내빈 견학을 허가받은 방문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부사항은 유엔사 규정 551-5를 참조한다.

10-4. 차량

군정위 본부구역을 포함하여 비무장지대 전역에 출입하는 구급차 이외의 모든 차량은 가로, 세로 각각 약 51센티미터 크기의 깃발을 차량 앞쪽 깃대에 부착해야 한다. 사용 가능한 깃발은 다음의 5가지이다.

a. 스웨덴, 스위스, 국기. 중감위 스웨덴/스위스 대표단 수송 차량.

b. 중감위 4 색기. 중감위 스위스, 스웨덴 참모 보좌인원 및 현지 고용된 중감위 소속 민간인 수송 차량.

c. 청색기. 인가된 군인, 방문객, 대성동 주민 및 건축, 정비 혹은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실시 인원 수송 차량. 보도기관 전용 차량도 영문과 한글로 ‘PRESS’와 ‘기자’라고 표기된 청색기를 부착해야 함. 그러나 보도기관 소속 인원들은 황색기를 부착한 차량으로도 수송 가능함.

d. 황색기. 군정위 신분증 소지자 수송 차량.

e. 주황색기. 관리구역을 통해 군사분계선을 통행하는 민간인, 인도지원단체, 비정부기구, 민간사업자, 비군용 관용차량.

f. 대성동 주민, 승인된 업체 관계자, 동해지구/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을 승인받은 인원을 제외한 개인 차량은 남방한계선 이북 출입이 허가되지 않는다.

10-5. 항공기 표식물

a. 유엔사군정위 및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소속 인원을 수송하는 항공기 및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내에서의 임무를 부여받은 의무 후송용 항공기는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내에서 비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해야 한다:

(1) 고정익 항공기. 동체와 각 날개 둘레에 총 3개의 황색 띠를 페인트로 칠한다. 비행 중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띠의 폭은 항공기의 크기에 적합하게 한다(통상 61센티미터).

(2) 회전익 항공기. 조종실과 후미 둘레에 총 3개의 황색 띠(폭 약 30센티미터)를 페인트로 칠한다.

b. 긴급 의무 후송용 항공기 및 소방헬기를 포함하여 유엔사군정위 비서처가 인가한 항공기 이외의 그 어떠한 항공기도 비무장지대/한강하구 안으로 비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규정 95-3).

10-6. 한강하구 선박 식별 표시

a.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소속 인원을 수송하는 모든 경비정은 좌/우현의 선수와 선미에 총 3개의 황색 수직선을 표시해야 한다. 수직선의 크기는 선박의 크기에 적합하게 하며, 통상적으로 길이는 0.6미터, 폭은 0.1미터이다. 추가로,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인원을 수송하는 경비정은 가로, 세로 약 1 미터의 황색기를 게양해야 한다.

b. 한강하구 순찰 임무를 부여받은 한강하구 민정경찰의 경비정은 가로, 세로 약 1미터의 청색기를 부착해야 한다.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인원 탑승 시에는 황색기도 추가로 부착해야 한다.

10-7. 북한군/중국인민지원군 식별 표시

북한군은 유엔사에 북한군 인원이 비무장지대/한강하구, 군정위 본부구역 및 판문점 내에서 사용할 식별 표시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다.

a. 북한군 측 군정위 소속 인원들은 비무장지대 전역에서 황색 완장을 착용하고, 차량에는 황색기를 부착한다.

b. (무장한) 북한군 비무장지대 민정경찰은 가로 약 32센티미터, 세로 약 14센티미터의 적색 완장을 윈幡에 착용한다. 이 완장에는 한글로 ‘경무’라고 표기한다.

c. 북한군 측 비무장지대 민정경찰의 차량 앞 부분에 적색기를 부착한다.

d. 판문점과 북한군 측 군정위 본부구역에 대한 경비를 제공하는 북한군 공동경비대 구성원들은 한글로 ‘경무’라고 표기된 적색 완장을 윈幡에 착용한다. 차량에는 적색기를 부착한다.

e. 북한군 측 보도인원은 백색 원 안에 영문 ‘P’, 원 양쪽에 한글 ‘기자’가 각각 한 글자씩 표기된 녹색 완장을 윈幡에 착용한다. 보도인원들은 적색기 혹은 녹색기가 부착된 차량으로 수송될 수 있다.

f. 비무장지대 내에서 북한군 측 건축 및 정비 인원은 적색 직사각형 모양의 천이나 적색 완장을 오른팔 혹은 왼팔에 착용한다. 건축 및 정비 차량에는 적색기를 부착한다.

g. 비무장지대의 북한군 측 방문객은 별도의 식별 표지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

제 11 장 영현 등록 업무

11-1. 개요

정전협정은 각방의 사망자의 유해 발굴 및 교환을 규정하고 있다. 어느 일방에 속한 유해가 상대 측의 영토에서 발견되었을 경우 양측 군정위 비서장을 통해 유해의 인계·인수 절차를 마련한다.

11-2. 책임

유엔군 사령관은 사망한 북한군/중국인민지원군 및 유엔사 인원의 매장지역 발견 시 이를 보고하고, 필요시 발굴작업을 지원하며, 유해의 발굴과 처리를 위해 전문 기술 요원을 제공한다.

11-3. 군인 유해 발굴 및 교환

a. 통상적으로 남측 비무장지대에서 발견된 유해는 해당 지역의 현지 부대가 발굴해야 한다. 비무장지대에서 유해가 발견될 경우 아래 절차가 적용된다:

(1) 최대한 신속하게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에 통지한다.

(2)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인원은, 적절한 경우,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 영현 등록 인원을 안내한다.

(3) 북한군/중국인민지원군 측 인원의 유해로 판명되었을 시, 이를 북한군/중국인민지원군 측에 인계하기 위해 군정위 비서장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4) 유엔사 측 인원의 유해일 경우, 영현 등록 인원이 관련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b. 한국에서 발견된 유해는 훼손되거나 이동되어서는 안 되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유엔사 측 인원의 유해로 추정될 경우 제34지원단 영현반에 통보하여 관련 지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c. 북한군/중국인민지원군이 유엔사 측 인원의 유해가 북한에서 발견되었음을 통보할 경우, 유엔사군정위 비서처는 해당 유해를 인수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한다.

제 12 장 인원교체

12-1. 개요

정전협정은 각방이 지정된 출입항을 통해 인원을 교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원 교체는 1 대 1로 실시하되, 교체 방침에 따라 어느 일방이든 한 달에 입국할 수 있는 군 인원 수는 3만 5천명 미만이다(정전협정 제13항 ㄷ목).

12-2. 책임

각 구성군 사령관은:

a. 각자의 통제하에 있는 인가된 출입항에서 출발하고 도착하는 교체 및 파견 근무 인원의 수를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에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다.

b. 어느 달이든 각자의 작전 통제하에 있는 지역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교체 인원의 수가 아래에 설정된 규모를 초과하지 않도록 필요한 통제 조치를 수립해야 한다. 만약 할당된 인원 수를 초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각 구성군 사령관은 이를 즉시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정전협정 제 13 항 ㄷ목).

- (1) 주한 미 육군 – 2만 2천명.
- (2) 주한 미 공군 – 1만명.
- (3) 주한 미 해군 – 2천명.
- (4) 주한 미 해병 – 1천명.

12-3. 출입항

전속 명령을 받은 인원은 군산, 인천-김포(인천 국제공항 및 오산 공군기지 포함) 공항과 인천항, 부산항을 통해서만 입국 혹은 출국해야 한다. 과전 근무 인원은 어느 공항이나 항구를 통해서든 출입국이 가능하다.

12-4. 절차

- a. 주한미군 인참부는 인원 교체 및 배치를 요약한 월간 보고서를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에 제출한다. 해당 보고서는 검토 후 중감위에 전달된다.
- b. 전구 훈련 기간에는 상기 절차에 따라 일일보고서를 제출한다.

별지 A 참고 문헌

정전협정: 제1권, 협정 본문; 제2권, 지도.

정전협정 서명 후에 이루어진 합의서, 1976년 10월 1일 수정(한정 배포; 관련 조항 본 문건에 포함됨).

비무장지대 대북 방송용 확성기 승인, 2017년 2월.

CJ-CO-G, 비무장지대 내 작전 관련 권한, 1975년 2월 27일.

한국 육군과 주한미군 간 비무장지대 항공 표식물 상호 지원에 관한 주한미군 사령관과 한국 육군 참모총장 간의 합의각서.

한국 육군 제 1 사단과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간의 합의각서, 2003년 8월.

정전 관리 책임에 대한 한국 합동참모 본부와 유엔군 사령부 간의 기록각서, 2011년 10월 24일.

한국 정전협정의 현행 예외사항에 대한 한국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 간의 기록 각서, 2014년 7월 17일.

비무장지대 내 인가된 한국 정전협정 예외사항에 대한 유엔군 사령관 각서, 수신: 한국 합동참모의장, 2014년 11월 26일.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정전의무 및 기여확대 재확인 각서, 2016년 5월 12일.

전략 지시 2 호, 1994년 12월 1일.

후속합의서, 1954년 8월 17일.

후속합의서, 사민의 비무장지대 출입에 관한 합의, 1954년 2월 22일.

후속합의서, 사민의 비무장지대 출입에 관한 합의의 수정, 1955년 6월 27일.

관련 약정: 유엔군사령부 관련 약정 및 전략 지침, 2018년 6월 10일.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사 관련약정, 2b(8)항 및 2b(9)항, 1994년 12월 1일.

후속합의서들에 명시된 “군사적인 문제” 관련 약정, 2000년 11월 17일, 2002년 9월 12일, 2002년 9월 17일.

항공기 월경방지 경고 표지판 점검 및 예산관련 유엔군사령관 결심 서한, 2015년 1월 29일.

유엔사/연합사 규정 525-4, 유엔사/연합사 정전교전규칙.

유엔사/연합사 예규.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규정 95-3, 한국 전술지역 P-518 비행 절차.

유엔사 방침 서한 2005-02, 비무장지대 안보견학장 위치 및 절차.

유엔사 규정 525-2, 대성동 민사행정.

유엔사 규정 551-5,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 안보견학.

유엔사 규정 551-6, 비무장지대 안보견학.

유엔사 규정 600-1,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유엔사군정위): 유엔사군정위 및 유엔사군정위 자문단 위원 지명, 신임 및 참여

유엔사 규정 600-2, 유엔사 인원 신임.

유엔사 규정 606-1, 개인 식별 표지 유엔사 신분증.

유엔사군정위 정전협정 군사분계선 프로젝트 1-B단계 추출 보고서, 2016년 5월 2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84 호, 1950년 7월 7일.

주한미군 규정 700-11, 유엔사 연락단 지원.

주한미군/미 8 군 예규.

별지 B
대외 배부처 목록

(4) 한국 서울 한국 합동참모본부

(6) 한국 대전 한국 육군 본부

(6) 한국 대전 한국 공군 본부

(6) 한국 대전 한국 해군 본부

(10) 한국 발안 한국 해병대 본부

(15) 한국 제 1 야전군 사령관

(15) 한국 제 3 야전군 사령관

(16) 유엔사 회원국

용어집

제 1 절. 약어

AA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정전협정
ACCO	Assistant Corridor Control Officer	관리구역 부통제장교
APS	Army Prepositioning Stock	육군 사전배치 재고
AROE	Armistice Rules of Engagement	정전교전규칙
BZ	Buffer Zone	완충지대
CACC	Commander, Air Component Command	공군 구성군 사령관
CC Seoul	UNC/CFC Command Center Seoul	서울 지휘소
CNCC	Commander, Naval Component Command	해군 구성군 사령관
CCNCOIC	Corridor Control Non-Commissioned Officer in Charge	관리구역 통제책임부사관
CCNCO	Corridor Control Non-Commissioned Officer	관리구역 부사관
CCO	Corridor Control Officer	관리구역 통제장교
CCT	Corridor Control Team	관리구역 통제반
CFC	Combined Forces Command	연합사
CFC GFB	CFC Operations, Ground Forces Branch	연합사 지상작전과
CG	Commanding General	사령관
CGCC	Commander, Ground Component Command	지상 구성군 사령관
CMFC	Commander, Marine Forces Command	해병 구성군 사령관
CNFK	Commander, U.S. Naval Forces Korea	주한 미 해군 사령관
CDR, MARFORK	Commander, U.S. Marine Forces Korea	주한 미 해병대 사령관
CDR, SOCKOR	Commander, Special Operations Command Korea	주한 미 특수전 사령관
CDR, USFK	Commander, U.S. Forces Korea	주한 미 사령관
CDR, USAFK	Commander, U.S. Air Forces Korea	주한 미 공군 사령관

CDR, CPOTF	Commander, Combined Psychological Operations Task Force	연합 심리전 부대 사령관
CPV	Chinese People's Volunteers	중국 인민지원군
CDR, CUWTF	Commander, Combined Unconventional Warfare Task Force	연합 특수전사령관
DSD	Daeseong-dong	대성동
DCS	Deputy Chief of Staff	부참모장
DEOP	DMZ Education and Orientation Program	비무장지대 안보견학 프로그램
DMZ	Demilitarized Zone	비무장지대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북한
DV	Distinguished Visitor	귀빈
E&OP	Education and Orientation Program	안보견학 프로그램
EOC	Emergency Operations Center	비상작전본부
FROKA	First Republic of Korea Army	제 1 야전군(한국군)
GOP Fence	General Outpost Fence	일반전초 철책
GP	Guard Post	경계초소
HRE	Han River Estuary	한강하구
JCS	Joint Chiefs of Staff	합동참모본부
JDO	Joint Duty Office	공동일직실
JOT	Joint Observer Team	공동감시소조
KNRC	Korean National Red Cross	대한적십자사
KPA	Korean People's Army	북한군
MAC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군사정전위원회
MACHA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Headquarters Area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
MDL	Military Demarcation Line	군사분계선

MND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국방부
MOU	Ministry of Unification	통일부
MPF	Maritime Prepositioning Force	해병 사전 배치
MSR	Main Supply Route	부대 주보급로
NLL	Northern Limit Line	북방한계선
NNSC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중립국감독위원회
NWI	Northwest Islands	서북도서
OP	Observation Post	관측소
PAO	Public Affairs Office	공보실
PCS	Permanent Change of Station	전속
PMJ	Panmunjom	판문점
ROK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ROKA MOG	ROK Military Operations Group	남북관리구역 한국군 운영단
ROKAG	ROK Advisory Group	한국군 군정위 연락단
SA	Subsequent Agreements	후속합의서
SBL	Southern Boundary Line	남방한계선
SEC	Secretary	비서장
SIT	Special Investigation Teams	특별조사반
TC	Transportation Corridor	남북관리구역
TDY	Temporary Duty	파견 근무
TROKA	Third Republic of Korea Army	제 3 야전군(한국군)
UNC CDR	Commander United Nations Command	유엔군사령부 사령관
UNCMAC	UNC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UNCSB-JSA	United Nations Command Security Battalion – Joint Security Area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제 2 절. 용어

한국 정전협정.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 및 모든 정전협정 후속합의서를 포함한다.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는 정전협정 2권(지도)에 묘사된 지역 중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군정위 본부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의미한다.

군정위 본부구역.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 사무실과 회담 구역이 위치한 군정위 본부구역은 제4장에 기술되어 있다.

서북도서. 백령도(북위 37도 58분, 동경 124도 40분), 대청도(북위 37도 50분, 동경 124도 42분), 소청도(북위 37도 46분, 동경 124도 46분), 연평도(북위 37도 38분, 동경 125도 40분) 및 우도(북위 37도 36분, 동경 125도 58분)로 이루어진 도서군을 의미한다.